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경상남도

www.gyeongnam.go.kr

공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입 법 예 고

제2023-52호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제2023-53호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8
제2023-54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9

입 법 예 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52호**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17.12.29.)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운영에 필요한 용어 정의 (제2조)
- 나.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 (제3조)
- 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및 범위 (제4조)
- 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5조)
- 마.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제6조)
- 바. 정책이력 관리 및 평가(제7조~제8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2 1.(금)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자치행정국 행정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경남도청)

2) 전 화 : 055-211-2329 (FAX : 055-211-2319)

3) E-mail : angeloose@korea.kr

붙임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끝.

경상남도조례 제 호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5에 따라 경상남도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자료와 관련된 사람의 성명, 의견 등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경상남도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 및 결재자, 설계자, 용역 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 검사자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 지사가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도정 현안 사항
2. 대규모의 국책공사 및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도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제9조에 따른 경상남도 정보공개심의회가 대신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목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내역서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정책이력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인사발령 등으로 정책수행자와 주요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해 1월말까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변동사항에 따라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 제8조(평가 등)**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실명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 ②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공정한 평가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위탁시행을 할 수 있다.
- ③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서에 대하여는 그 업적에 따라 시상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		⑤ 담당자	○○○ 과장 ○○○ 주무관
⑥ 선정기준		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00.00.00	○○○ 도지사 ○○○ 부지사 ○○○ 실·국장 ○○○ 과장 ○○○ 사무관	
○ 내용	'00.00.00	○○○ 국장 ○○○ 과장 ○○○ 주무관 <관련자> ○○○ 국회의원	

<기재 항목>

-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 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적 기술
-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 ⑥ 선정기준 : 국·도정과제(현안)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조례 등 제·개정 폐지 / 기타 中 택1
-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53호**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2. **폐지이유** :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본 규칙은 폐지함.
3. **주요내용** :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2. 1.(금)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양대로 300(사림동)
- 2) 전 화 : 055-211-2329(FAX : 055-211-2319)
- 3) E-mail : angeloose@korea.kr

붙임 :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1부.

경상남도 규칙 제 호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54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나.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라.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마.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가. 당면한 주요정책 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구 및 소관 사무 신설 등 일부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정원을 조정·반영하려는 것임
- 나. 조직개편 등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부서 등을 정비

3. 주요내용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본청 실·국·본부 신설·폐지 및 명칭변경(안 제5조)
 - 1) 관광개발국 신설 및 현안 반영 실국명 변경
- 나. 산업통상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의4)
 - 1) 통상진흥 업무 이관 조정(→경제기업국)
- 다. 경제기업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의6)
 - 1) 경제 및 기업정책 일원화, 일자리 업무 이관(→인력지원과), 통상업무(←산업통상국)
- 라. 교육청년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8조의3)
 - 1) 교육청년국 신설에 따른 기능 조정
- 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10조)
 - 1) 관광개발국 신설에 따른 기능 조정
- 바.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11조)
 - 1) 여성가족정책 및 보육정책 업무 이관에 따른 기능 조정
- 사.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 1) 보건행정 및 의료정책, 감염병 관리, 식품안전 업무 이관에 따른 기능 조정
- 아. 관광개발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12조의2)
 - 1) 관광개발국 신설에 따른 기능 조정
- 자. 서부지역본부 명칭 변경(안 제29조의2, 4)
 - 1) 서부지역본부 → 균형발전본부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 소통담당관 명칭 변경 조정(안 제5조)
 - 1) 소통담당관 → 공보관
- 나. 미래전략추진단 신설 조정(안 제5조의6)
 - 1) 도정 정책개발 연구기능 강화
- 다. 기획조정실 직제 개편(안 제7조)
 - 1) 교육인재담당관 → 교육청년국
- 라. 산업통상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7조의4)
 - 1) 방위산업 육성(주력산업과←미래산업과), ICT산업(산업정책과→미래산업과), 우주항공산업과←균형발전국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마. 경제기업국 직제 개편(안 제7조의6)

- 1) (직제개편) 경제인력과+기업정책과 → 경제기업과, 인력지원과(→교육청년국), 국제통상과 ← 산업통상국

바. 자치행정국 명칭 조정(안 제8조의3)

- 1) 자치행정국 → 행정국

사. 교육청년국 직제 신설(안 제9조의3)

- 1) (직제개편) 교육인재과, 청년인구과, 인력지원과

아. 해양수산국 직제 개편 및 사무 조정(안 제10조)

- 1) (직제개편) 수산자원과 → 수산정책과
- 2) (사무조정) 수산식품산업+수산물안전 사무 이관(해양항만과→수산정책과), 귀어귀촌 신설(어촌발전과), 자원조정 사무 이관(수산정책과→어촌발전과)

자. 문화관광체육국 직제 개편 및 사무 조정(안 제11조)

- 1) (직제개편) 관광개발과, 관광진흥과 → 관광개발국, 문화재관리 → 문화유산보존, 문화재보수 → 문화유산보수
- 2) (사무조정) 체전홍보 신설(전국체전기획단)

차. 복지보건국 직제 개편 및 사무 조정(안 제12조, 제12조의4)

- 1) (직제개편)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식품의약과 이관 →보건의료국
- 2) (사무조정) 여성정책, 여성일자리, 건강가정, 다문화 등(여성가족과←여성정책과·가족지원과), 출산지원, 보육, 아동 및 청소년 등(보육정책과←가족지원과·아동청소년과)

카. 관광개발국 직제 신설(안 제13조의2)

- 1) (직제개편) 관광정책과, 남해안과(신설), 관광개발과

타. 농업기술원 소관 사무 조정(안 제18조)

- 1) 농업기술원 이전 추진 업무(←지역발전과)

파. 서부지역본부 명칭 변경(안 제35조의2)

- 1) 서부지역본부장 → 균형발전본부장

하. 수산안전기술원 직제 개편(안 제46조의4)

- 1) (직제개편) 수산관리과+기술지원과 → 수산관리과, 수산물안전관리센터 → 수산물검사과

③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 제3조의 별표2, 제4조의 별표3)

- 1) 정무직 : 3명 → 변동 없음
- 2) 일반직 : 2,383명 → 2,384명(증 1명)
 - 가) 2급~3·4급 이상 : 18명 → 19명(증 1명)
 - 나) 4급 : 93명 → 94명(증 1명)
 - 다) 5급이하 : 2,261명 → 2,260명(감 1명)

- 라) 전문경력관 : 11명 → 변동 없음
- 3) 연구직 : 257명 → 변동 없음
 - 가) 연구관 : 40명 → 변동 없음
 - 나) 연구사 : 217명 → 변동 없음
- 4) 지도직 : 31명 → 변동 없음
- 5) 별정직 : 22명 → 변동 없음
- 6)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 가) 소방정 : 25명 → 변동 없음
 - 나) 소방령 이하 : 4,348명 → 변동 없음
- 7) 교육직 : 74명 → 변동 없음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 정원 조정(안 제2조의 별표)
 - 1) 총 정원 : 7,143명 → 7,144명(증 1명)
 - 2) 정원관리기관별
 - 가) 본청 : 1,905명 → 1,910명(증 5명)
 - 나) 의회사무처 : 157명 → 변동 없음
 - 다) 직속기관 : 4,493명 → 4,491명(감 2명)
 - 라) 지역본부 : 1명 → 변동 없음
 - 마) 사업소 : 514명 → 513명(감 1명)
 - 바) 합의제행정기관 : 69명 → 68명(감 1명)
 - 사) 경제자유구역청 : 4명 → 변동 없음
 - 3) 직종별·직급별
 - 가) 일반직 : 2,383명 → **2,384명**(증 1명)
 - 1) 3·4급 이상 : 18명 → **19명**(증 1명)
 - 2) 4급 : 93명 → **94명**(증 1명)
 - 3) 5급 : 426명 → **442명**(증 16명)
 - 4) 6급 : 797명 → **790명**(감 7명)
 - 5) 7급 : 690명 → **681명**(감 9명)
 - 6) 8급 : 310명 → **306명**(감 4명)
 - 7) 9급 : 38명 → **41명**(증 3명)
 - 8) 전문경력관 : 11명 → 변동없음
 - 나) 연구직 : 257명 → 변동없음
 - 1) 연구사 : 217명 → 변동없음
 - 다) 별정직 : 22명 → 변동없음
 - 4급상당 : 9명 → 변동없음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 라) 소방직 : 4,373명 → 변동없음
 - 소방령 : 97명 → 변동없음
 - 소방경 : 332명 → **336명**(증 4명)
 - 소방위 : 393명 → **425명**(증 32명)
 - 소방교 : 1,059명 → **1,058명**(감 1명)
 - 소방사 : 1,765 → **1,730명**(감 35명)
- 마) 교육직 : 74명 → 변동없음

4) 직급·직렬별

가) 일반직 : 2,383명 → **2,384명**(증 1명)

- 3급 : 행정 증1
- 4급 : 행정 증1
- 5급 : 농업·수의·수의연구 감1, 농업·수의·식품위생·수의연구 증1, 보건·의무 감1, 보건·의무·간호 증1, 수의·수의연구 증1, 시설 감2, 시설·농업연구 증1, 해양수산 증1, 행정 감2, 행정·간호 감1, 행정·공업 증4, 행정·공업·농업·환경 증1, 행정·공업·방송통신 증2, 행정·공업·시설 증2, 행정·공업·환경 증1, 행정·녹지·시설 증1, 행정·농업 감2, 행정·농업·보건·식품위생 증1, 행정·농업·보건·환경 감3, 행정·농업·식품위생 증1, 행정·보건 감3, 행정·보건·간호 증3, 행정·보건·식품위생·간호 증1, 행정·보건·환경 감1, 행정·사회복지 증3, 행정·사회복지·보건 증2,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증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증1, 행정·속기·보건·환경 증1, 행정·수의·환경 감1, 행정·시설 증5, 행정·해양수산 감1, 환경 감1
- 6급 : 간호 감1, 공업·환경 감1, 녹지 감1, 농업 감1, 농업·수의 감1, 농업·해양수산 증1, 보건 감1, 보건·식품위생 감1, 보건·식품위생·환경 증1, 보건·환경 감1, 속기 증1, 수의·수의연구 감1, 시설 감2, 식품위생 감1, 전산 감1, 행정 감17, 행정·공업 감3, 행정·공업·보건·시설 증1, 행정·공업·시설 증1, 행정·농업 증1, 행정·농업·보건·환경 증9, 행정·농업·수의 증1, 행정·보건·시설 증1, 행정·보건·환경·시설 증2, 행정·사회복지 증2, 행정·세무 증2, 행정·수의·보건 감1, 행정·시설 증4, 행정·전산 증1, 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 증1, 행정·해양수산 감2, 행정·해양수산·시설 증1, 환경·시설 감1
- 7급 : 공업 감1, 농업 감1, 농업·보건·식품위생·환경 증1, 방송통신 감1, 보건·간호 감1, 보건·식품위생·간호 감1, 보건·식품위생·환경 감1, 속기 증1, 시설 감2, 해양수산 증1, 해양수산·시설 증1, 행정 감20, 행정·공업 증1, 행정·공업·보건·시설 증1, 행정·공업·시설 증1, 행정·농업·보건·환경 증7, 행정·보건 감1, 행정·사회복지 증2, 행정·시설 감1, 행정·전산 증3, 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 증2
- 8급 : 간호 감1, 공업 증1, 기계운영 감1, 보건·환경 감1, 사회복지·보건·간호 감1, 속기 감2, 운전 감1, 해양수산 증1, 행정·녹지·환경 증1, 행정·농업·녹지 감1, 행정·보건·시설 증1, 행정·보건·식품위생 증1, 행정·전산·보건 감1
- 9급 : 기계운영 감1, 행정 증4

- 나) 소방직 : 4,373명 → 변동없음
 - 소방경 증4, 소방위 증32, 소방교 감1, 소방사 감35
- 다) 연구직 : 253명 → 변동없음
 - 보건연구 감10, 보건연구·환경연구 증20,, 환경연구 감10
- 라) 기타 직종 : 변동 없음

5]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세부분장사무 조정 및 직제순 변경(안 제3조제1항, 별표2)

- 1) 총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 2) 소통홍보담당관 내 정보화담당 신설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27.(월)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안대로 300(사림동)
- 2) 전 화 : 055-211-2363 (FAX : 055-211-2319)
- 3) E-mail : okcjs@korea.kr

- 붙임**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5.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경상남도조례 제 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국”을 “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경제기업국 ”을 “경제통상국”으로 하며, 같은 항제6호 중 “서부지역본부”를 “균형발전본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도민안전본부·산업통상국·경제기업국·자치행정국·해양수산물국·도시주택국·교통건설국·문화관광체육국·복지보건국·여성가족국·균형발전국·농정국·환경산림국”을 “기획조정실·도민안전본부·산업국·경제통상국·행정국·교육청년국·해양수산물국·도시주택국·교통건설국·문화체육국·복지여성국·보건의료국·관광개발국·농정국·환경산림국”으로 한다.

제6조의4의 제목 “(산업통상국)”을 “(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2의2.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의6의 제목 “(경제기업국)”을 “(경제통상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기업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경제 및 일자리, 산업인력 정책”을 “경제 및 기업정책·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기업정책 및 지원”을 “통상 진흥과 국제교류·협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의 “ 사회적 경제정책 및 기업육성지원”을 “노동사회정책 및 기업육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3의 제목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며, 제1호 중 “지방행정·자치분권 및 ”을 “지방행정 및 ”으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교육청년국) 교육청년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 정책 및 지원, 대학협력,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및 인구대응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산업인력·외국인인력 정책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호 중 “해양수산물 및 항만정책, 수산식품산업·수산물안전”을 “해양 및 항만정책·항만개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어업생산, 어업조정”을 “수산정책 및 수산지원·수산물안전”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체육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하며, 제3호 및 제6호를 삭제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국체전기획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제목 “(복지보건국)”을 “(복지여성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보건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노인복지”를 “노인정책”으로 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삭제하고 제7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여성가족정책에 관한 사항
8.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를 삭제한다

제11조제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보건의료국) 보건의료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
2. 의료정책 등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관리 등 생활방역 추진에 관한 사항
4. 식품 안전에 관한 사항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관광개발국) 관광개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남해안 관광개발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관광개발사업 총괄 기획·발굴·시행 등에 관한 사항

제4장 제1절 중 “서부지역본부”를 “균형발전본부”로 한다.

제29조의2 제1항 중 “서부권 지역과 관련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경남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하고,
“서부지역본부”를 “균형발전본부”로 한다.

제29조의4제1호 중 “균형발전국”을 “균형발전단”으로 한다.

제82조 중 “「지방자치법」 제129조”를 “법 제129조”로 한다.

제85조 중 “「지방자치법」 제129조”를 “법 제129조”로 한다.

제87조제6호 중 “협약, 제30조제4항”을 “협약 및 같은 법 제30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 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제4조(한시기구) 관광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소통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소통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제8조제4항 중 “소통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소통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소통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소통담당관”을 “기획조정실·교육청년국·공보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산업통상국·경제기업국”을 “산업국·경제통상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중 “균형발전국”을 “균형발전단”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체육국·관광개발국”으로 하고, “복지보건국·여성가족국”을 “복지여성국·보건의료국”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⑩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하고, “경제기업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며, “복지보건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⑪ 「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⑫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⑬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⑭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⑮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⑯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⑰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⑱ 「경상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제8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복지보건국장”을 “행정국장, 문화체육국장,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①9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②0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②1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경제기업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②2 「경상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제기업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②3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경제기업국장, 여성가족국장, 복지보건국장”을 “경제통상국장, 복지여성국장, 보건의료국장”으로 한다.

②4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균형발전국장”을 “균형발전본부장”으로 한다.

②5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6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7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8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9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0 「경상남도 자원봉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1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제3항, 제15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2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3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4 「경상남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7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5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제6조제4항 중 “여성가족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㉞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여성가족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㉟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여성가족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㊱ 「경상남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보건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㊲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보건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㊳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복지보건국장”을 “보건의료국장”으로 한다.

㊴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 복지보건국장”을 “문화체육국장,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부지사) ① ~ ② (생 략)</p> <p>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u>산업통상국</u>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p> <p>2. <u>경제기업국</u>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p> <p>3. ~ 5. 삭제</p> <p>6. <u>서부지역본부</u>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p> <p>7. (생 략)</p>	<p>제4조(부지사)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1. <u>산업국</u> -----</p> <p>2. <u>경제통상국</u> -----</p> <p>6. <u>균형발전본부</u>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p> <p>7. (현행과 같음)</p>
<p>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기획조정실·도민안전본부·산업통상국·경제기업국·자치행정국·해양수산국·도시주택국·교통건설국·문화관광체육국·복지보건국·여성가족국·균형발전국·농정국·환경산림국</u>을 둔다.</p> <p>② (생 략)</p>	<p>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p> <p>----- <u>기획조정실·도민안전본부·산업국·경제통상국·행정국·교육청년국·해양수산국·도시주택국·교통건설국·문화체육국·복지여성국·보건의료국·관광개발국·농정국·환경산림국</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 7. (생 략)</p> <p>8. 교육 정책 및 지원, 대학협력,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p>	<p>제6조(기획조정실) -----.</p> <p>1. ~ 7. (현행과 같음)</p> <p><삭 제></p>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현 행	개 정 안
<p>9. (생 략)</p> <p>제6조의4(산업통상국) <u>산업통상국장</u>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 2. (생 략)</p> <p><u><신 설></u></p> <p>5.·6. 삭 제</p> <p>7. 통상 진흥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p> <p>제6조의6(경제기업국) <u>경제기업국장</u>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경제 및 일자리, 산업인력 정책에 관한 사항</p> <p>2. <u>기업정책 및 지원</u>에 관한 사항</p> <p>3. (생 략)</p> <p>4. 사회적 경제정책 및 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p> <p>5. 삭제</p> <p>6. 노사협력, 노동복지 등 노사지원에 관한 사항</p> <p>제7조의3(자치행정국) <u>자치행정국장</u>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도 공무원 복무관리, <u>지방행정·자치분권 및 시군의 지원·조정</u>에 관한 사항</p> <p>2. ~ 5.(생 략)</p> <p><u><신 설></u></p> <p>제9조(해양수산물국) <u>해양수산물국장</u>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u>해양수산 및 항만정책, 수산식품산업·수산물안전</u>에 관한 사항</p> <p>2. <u>어업생산, 어업조정</u> 등 수산자원에 관한 사항</p> <p>3. (생 략)</p> <p>제10조(문화관광체육국) <u>문화관광체육국장</u>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9.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4(산업국) <u>산업국장</u>----- -----.</p> <p>1. ~ 2. (현행과 같음)</p> <p><u>2의2.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u></p> <p><u><삭 제></u></p> <p>제6조의6(경제통상국) <u>경제통상국장</u>----- -----.</p> <p>1. 경제 및 기업정책·지원-----</p> <p>2. 통상 진흥과 국제교류·협력-----</p> <p>3. (현행과 같음)</p> <p>4. 노동사회정책 및 기업육성 등-----</p> <p><u><삭 제></u></p> <p>제7조의3(행정국) <u>행정국장</u>----- -----.</p> <p>1. -----, <u>지방행정 및</u> ----- -----</p> <p>2. ~ 5.(현행과 같음)</p> <p>제8조의3(교육청년국) <u>교육청년국장</u>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u>교육 정책 및 지원, 대학협력, 평생교육</u>에 관한 사항</p> <p>2. <u>청년정책 및 인구대응</u> 등에 관한 사항</p> <p>3. <u>일자리, 산업인력·외국인인력</u> 정책에 관한 사항</p> <p>제9조(해양수산물국) -----.</p> <p>1. <u>해양 및 항만정책·항만개발</u> 등----- -----</p> <p>2. <u>수산정책 및 수산지원·수산물안전</u> -----</p> <p>3. (현행과 같음)</p> <p>제10조(문화체육국) <u>문화체육국장</u>----- -----.</p>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현 행	개 정 안
<p>1. ~ 2. (생 략)</p> <p>3.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p> <p>4. ~ 5. 삭제</p> <p>6. 관광개발사업 기획·발굴·시행 등에 관한 사항</p> <p>7. (생 략)</p> <p><신 설></p> <p>제11조(복지보건국) 복지보건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생 략)</p> <p>2. <u>노인복지에 관한 사항</u></p> <p>3. (생 략)</p> <p>4.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p> <p>5. 감염병 관리 등 생활방역 추진에 관한 사항</p> <p>6. 식품의약품 안전 및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p> <p><신 설></p> <p><신 설></p> <p>제11조의2(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u>여성정책에 관한 사항</u></p> <p>2. <u>가족지원에 관한 사항</u></p> <p>3. <u>아동 및 청소년 정책에 관한 사항</u></p> <p>4. <u>청년정책에 관한 사항</u></p> <p><신 설></p> <p>제12조(균형발전국) 균형발전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u>지역균형발전, 인구정책, 지역개발, 서부민원 및 서부청사 운영에 관한 사항</u></p> <p>2. 3. 삭제</p>	<p>1. ~ 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7. (현행과 같음)</p> <p>8. <u>전국체전기획에 관한 사항</u></p> <p>제11조(복지여성국) <u>복지여성국장</u>----- -----.</p> <p>1. (현행과 같음)</p> <p>2. <u>노인정책</u>-----</p> <p>3.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7. <u>여성가족정책에 관한 사항</u></p> <p>8. <u>보육정책에 관한 사항</u></p> <p><삭 제></p> <p>제11조의3(보건의료국) 보건의료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u>보건행정에 관한 사항</u></p> <p>2. <u>의료정책 등에 관한 사항</u></p> <p>3. <u>감염병 관리 등 생활방역 추진에 관한 사항</u></p> <p>4. <u>식품 안전에 관한 사항</u></p> <p><삭 제></p>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현 행	개 정 안
<p>4.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5.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도심개발 및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 등에 관한 사항</p> <p><신 설></p> <p>제1절 서부지역본부</p> <p>제29조의2(설치) ① 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서부권 지역과 관련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부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를 둔다.</p> <p>제29조의4(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균형발전국</u>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 5. (생 략) <p>제82조(설치)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제85조(설치)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제87조(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 (생 략)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 17. (생 략) 	<p>제12조의2(관광개발국) 관광개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남해안 관광개발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관광개발사업 총괄, 기획·발굴·시행 등에 관한 사항 <p>제1절 균형발전본부</p> <p>제29조의2(설치) ① ----- ----- ---- <u>경남의 지역균형발전 정책</u>----- ----- ---<u>균형발전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u>--- -----.</p> <p>제29조의4(소관사무)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균형발전단 ----- 2. ~ 5. (현행과 같음) <p>제82조(설치) <u>법 제129조</u>----- ----- ----- ---</p> <p>제85조(설치) <u>법 제129조</u>----- ----- ----- -----.</p> <p>제87조(소관사무)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 (현행과 같음) 6.----- ----- ----- <u>협의 및 같은 법 제30조제4항</u>----- ----- 7. ~ 17. (현행과 같음)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2024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의 신설, 사무조정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4조제1항제2호의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장 재 혁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④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시·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① 시·도는 별표 1에 따른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국·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는 제1항에 따라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삭제 또는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그 설치 내용,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조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시·도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도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도의 과·담당관 등의 설치) 시·도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시·도자치경찰위원회)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경상남도규칙 제 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소통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을 “공보관, 홍보담당관 및 미래전략추진단”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소통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 중 “소통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

제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6(미래전략추진단) ① 미래전략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미래전략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1. 도정 정책개발·연구
2. 미래전략 과제 발굴 및 미래유망산업 대응전략 구상
3. 경남 미래비전 수립 및 관리, 미래전략 네트워크 운영
4. 주요 정책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도정 반영

제6조의19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벤처기업 육성 지원

제7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교육인재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을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 교육인재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을 “예산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12호를 삭제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정 종합개발계획 수립·조정

제7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4의 제목 “(산업통상국)”을 “(산업국)”으로 하고, 제1항 중 “산업통상국”을 “산업국”으로 하고, “산업정책과, 전략산업과, 미래산업과, 에너지산업과 및 국제통상과”를 “산업정책과, 주력산업과, 우주항공산업과, 미래산업과 및 에너지산업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산업정책과장, 전략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및 국제통상과장”을 “산업정책과장, 주력산업과장, 우주항공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및 에너지산업과장”으로 한다.

제7조의4제3항 중 제21호부터 제25호까지를 삭제한다.

제7조의4제4항 중 “전략산업과장”을 “주력산업과장”으로 하고,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의4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우주항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 및 항공산업 육성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우주 및 항공산업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주 및 항공산업 특화단지 조성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4. 우주 및 항공산업 유치에 관한 사항
5. 우주 및 항공산업 인프라, 연구개발, 이벤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주항공청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의4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를 신설한다.

16. ICT융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정보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8.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지원
19. ICT 및 소프트웨어 산업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20.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1. 반도체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2. AI 및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7조의4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7조의4제10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6의 제목 “(경제기업국)”을 “(경제통상국)”으로 하고, 제1항 중 “경제기업국”을 “경제통상국”으로 하며, “경제인력과, 기업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및 사회경제노동과”를 “경제기업과, 국제통상과, 소상공인정책과 및 사회경제노동과”로 하고, 제2항 중 “경제인력과장, 기업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및 사회경제노동과장”을 “경제기업과장, 국제통상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및 사회경제노동과장”으로 한다. 제7조의6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경제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단위 경제발전 계획의 수립·지도
3. 지역경제발전방안 연구 및 지원
4. 경제활동 관련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5. 서민금융 안정 및 지원, 대부업 관리에 관한 사항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7. 물가 및 소비자보호 종합대책 수립 조정
8. 기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조정
9.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10.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 및 계열화 촉진사업 추진
12.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13.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14.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관련 사항
15. 기업활동(경제행정) 규제완화 및 애로해소협의회 운영
16. 수출입 등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17. 기업방문 애로 청취 등 기업애로 해소에 관한 사항
18. 기업활동 관련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9. 지역 산업디자인 육성 종합계획 수립
20.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및 육성
21. 지역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지원
22. 경제자유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의6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시장조사 및 개척사업 총괄
2. 무역사절단 및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3. 중소기업제품 수출상담 지원
4. 무역진흥시책 종합기획·조정
5. 수출진흥, 수출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 해외 수출 마케팅 업무 총괄
7. 국내외 무역정보 및 해외시장 동향수집
8.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확인 등에 관한 사항
9. 국제교류 협력 총괄 조정
10.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
11. 공무국외여행 관련 사항 및 외국인 영접 안내
12. 교민행정의 종합 기획
13. 국제관계 의전행사 지원
14. 자치단체 국제화 시책 개발·연구
15. 민간단체 국제교류사업 지원
16. 도정의 국제 홍보 및 자료수집

제8조의3의 제목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하고, 제1항 중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한다.

제8조의3제3항 중 제14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교육청년국에 두는 과) ① 교육청년국에 교육인재과, 청년인구과 및 인력지원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교육인재과장, 청년인구과장 및 인력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교육인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청년국 소관 행정 총괄에 관한 사항
2. 교육정책 및 교육청 정책협약에 관한 사항
3. 교육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4. 교육혁신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5. 시군 맞춤형 교육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6.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7. 도립대학 및 도내 대학지원, 산학협력 총괄 등에 관한 사항
8. 대학생 학자금 이자 및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
9. 남명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유학생의 도내 대학 유치·알선 지원
11. 대학협의회체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학 평생교육지원체제 지원에 관한 사항
13.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4.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④ 청년인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2. 청년정책 신규시책 발굴 추진
3. 경상남도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 네트워크 구성 운영
4.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된 사항
6.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7. 인구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인구소멸대응기금에 관한 사항

⑤ 인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기업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6.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인턴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8. 일자리 공시제에 관한 사항
9.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10.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총괄
11.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12. 일자리 영향평가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13. 산업인력 수급 등 산업인력정책,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인력 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노동자 지원계획, 입국비자 등에 관한 사항
16. 광역비자 등 비자 시범사업, 이민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수산자원과”를 “수산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자원과장”을 “수산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하고,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삭제한다.

제10조제4항 중 “수산자원과장”을 “수산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3까지 신설하고,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 신설하며,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삭제한다.

- 1의2. 어촌계 지도·육성 및 수산단체 지도
- 1의3. 수산안전기술원 운영관리·지도
- 7의2. 수산물 수출 종합계획 수립
- 7의3. 수산물 가공·유통 등 수산식품산업 및 수산물안전에 관한 사항
- 7의4. 수산물 시장개척 및 유통 알선·지도

제10조제5항 중 제7호의 “어촌 및 어촌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어촌 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삭제하며, 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부터 제7호의3호를 신설하고, 제18호부터 제20호를 신설한다.

7의2. 귀어 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의3.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8. 수산자원조성사업 계획 수립

19.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관한 사항

20. 인공어초 시설사업

제11조의 제목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체육국)”으로 하고, 제1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체육국”으로 하며, “관광진흥과, 관광개발과, 체육지원과 및 전국체전기획단”을 “체육지원과 및 전국체전기획단”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관광진흥과장, 관광개발과장 및 체육지원과장”을 “체육지원과장 및 전국체전기획단장”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복지보건국)”을 “(복지여성국)”으로 하고, 제1항 중 “복지보건국”을 “복지여성국”으로 하며,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및 식품의약과”를 “복지정책과, 노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및 보육정책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보건행정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및 식품의약과장”을 “복지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및 보육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에 제3의2호부터 제3의4호까지를 신설하며, 같은 항제16호를 삭제한다.

3의2. 보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의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3의4. 보훈단체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제4항 중 “노인복지과장”을 “노인정책과장”으로 하고, 제1호 중 “노인복지 및 보훈에 관한”을 “노인 복지에 관한”으로 하고, 제1의3호부터 제1의4호까지를 삭제하며, 제1의5호를 신설한다.

1의5. ICT연계 스마트 복지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

제1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정책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2.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3. 양성평등기금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정책 연구기관 지도 감독
6. 여성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7. 여성인권 및 지위향상 정책 추진

- 8. 가정·성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9.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10.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11. 양성평등정책 분석 및 평가
- 12. 여성(복지)회관 운영 지도
- 13.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 14. 여성일자리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15. 건강가정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 16. 가정 및 가족문제 예방·해결 등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 17. 한부모가정 및 미혼모 자립 지원
- 18.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 19.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통합에 관한 사항

제12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출산지원시책 추진
- 2. 모자보건사업계획 수립 추진
- 3.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4.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원 지도·감독
- 5. 직장 및 민간 보육시설 설치 지원
- 6.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 7.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아동 보호 관리
- 8. 불우아동 결연기금 관리
- 9.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및 보호관리
- 10. 아이돌봄 윈스톱 지원 및 돌봄공백해소에 관한 사항
- 11. 청소년 육성사업의 종합 기획·추진
- 12. 청소년시설 설치 및 지원
- 1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 14.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 15.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
- 16.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 17.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 18.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19.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제12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보건의료국에 두는 과) ① 보건의료국에 보건행정과, 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및 식품위생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건행정과장, 의료정책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및 식품위생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 보건소 등(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도·감독
3. 건강증진 업무 종합기획 및 추진
4. 건강관리협회 지도
5. 정신보건 업무 종합 기획 및 추진
6. 정신보건 시설 인가·지도·관리
7. 공공병원 설립 등에 관한 사항
8. 의료취약지역(섬)에 대한 병원선 운영·관리

④ 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 및 의약품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방의료원 지도·감독
3.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의료기관 운영 등 지도·감독 관리
5.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6.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감독
7. 불량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 등 지도·감독
8. 의료법인 허가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9. 마약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10.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1. 지역응급의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2.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한방의료기관 및 한약업소 지도·감독

⑤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방역 등 감염병 관리에 관한 전반 계획 수립·시행
2. 생활방역 교육 및 홍보
3. 감염병 이후 중·장기 제도개선 이행과제 점검 총괄
4.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역학조사 계획 수립
5. 감염병 유행 및 집단발생 대응
6. 신종감염병 및 해외유입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 및 예방관리

7. 결핵·한센병·성병 등 감염성 질환의 예방 관리 및 방역
8. 방역·소독 지원에 관한 사항
9. 감염병 관련 단체 지도·관리
10. 감염병 통계 관리 및 유행실태 분석
11.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및 격리병상 운영·관리
12. 선별진료소 운영 및 지원
13. 공공의료기관 운영 등 지도·감독 관리
14.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⑥ 식품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3. 국민건강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4.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
5. 식품제조업소 및 소비자 유통식품 지도·감독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관광개발국에 두는 과) ① 관광개발국에 관광정책과, 남해안과 및 관광개발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관광정책과장, 남해안과장 및 관광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행정 및 관광개발 종합기획·조정
2.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
3.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지정·개발 및 민간유치계획 수립·추진
5.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관광안내 및 홍보
8. 관광객 유치 및 관광루트 개발
9. 관광중사원 지도·교육
10. 관광수용태세 관련 지원업무
11. 종합 유원시설업 및 그 밖에 유기업장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대규모 관광행사 유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관광상품·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관광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5.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16. 문화예술 및 관광관련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17. 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8. 국내외 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
 19. 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시설관리 포함)
 20. 국내외 컨벤션 마케팅 및 홍보
 21. 한국국제기계박람회 개최
 22. 국내외 회의·이벤트 발굴, 유치 및 개최 지원
 23. 컨벤션 뷰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
- ④ 남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해안관광 기반조성 총괄 기획·조정 및 계획 수립
 2. 남해안개발청 설립 추진 계획 수립 및 용역 추진, 대외 협력
 3. 항공관광, 크루즈 관광 분야 기획·지원, 인프라 구축
 4. 어촌관광자원 개발사업
 5.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및 남해안 선도사업에 관한 사항
 6.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및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조성에 관한 사항
 7.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해양레저산업 클러스터 조성, 육성전략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0. 해양레포츠 및 요트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해수욕장에 관한 사항
 12. 해양치유 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섬 연결도로 및 연계 도로망 구축 계획 수립·추진
 14. 섬 연결도로 예타(면제)사업 반영 및 국비 지원 관련 업무
 15. 섬 연결 해상교량 관광자원화 기획 및 인프라 구축 지원
 16. 남해안아일랜드하이웨이 구축 시군·유관기관 협력
 17. 남해안아일랜드하이웨이 연계 주변 관광개발 인프라 구축 지원
 18. 섬 관광 활성화 사업 발굴·추진, 제도 개선 발굴·건의
- ⑤ 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역권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2. 관광프로젝트 사업 기획·발굴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3. 관광단지 지정·개발 및 민간유치계획 수립·추진
 4. 관광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관광자원 개발사업 민자 등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목관광단지개발사업 추진

7.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 기반시설 확충

8.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운영

9. 민관협력사업 통합수익관리법인 운영 및 지원

10. 지리산 및 바다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사항

11. 지리산권, 백두대간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제3항 중 제8호부터 제9호까지를 삭제한다.

제15조의2제9항 중 “119특수구조단장”을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제18조에 제6호부터 제7호까지를 신설한다.

6. 농업기술원 이전 추진에 관한 사항

7. 농업기술원 청사 이전 관련 용역사업, 예산 등 행정절차 추진

제30조의2제3항 중 제10호부터 제11호까지를 삭제한다.

제4장제1절 중 “서부지역본부”를 “균형발전본부”로 한다.

제35조의2 중 “서부지역본부장”을 “균형발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하부조직) ① 균형발전본부에 균형발전단을 둔다.

② 균형발전단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균형발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사항

2. 도내 공공기관 이전 계획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서부청사 기능 조정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 시즌2 운영에 관한 사항

5.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6.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

7.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에 관한 사항

8.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총괄

9.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협력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초전신도심 개발계획 수립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서부권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12. 균형발전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13. 도 및 정부 균형발전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4. 균형발전사업평가 및 경상남도 균형발전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5. 지역혁신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16. 지역균형발전 대상지 선정 및 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17. 지방분권 업무 총괄

18. 서부경남 시·군 전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9. 낙후지역 지정, 소도읍 육성 지원, 거점지역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1.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2. 동서통합지대 조성에 관한 사항
23. 내륙권(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4. 서부지역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25. 본청 소관 민원의 서부청 연계 처리에 관한 사항
26. 서부청사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27. 서부청사 행정지원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8. 균형발전본부 내 각종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제46조의4제1항 중 “수산물관리과·기술지원과·수산물안전관리센터”를 “수산물관리과·수산물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기술지원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수산물안전관리센터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을 “수산물검사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어촌지도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한다.

제46조의4제3항 중 제11호부터 제12호까지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22호를 신설한다.

13. 수산기술의 보급 및 어업경영 지도
14.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15. 양식산업 분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어장 예비관찰 및 수산 재해 예방 지도
17. 수산 양식장 적지 조사에 관한 사항
18. 연구교습어장 운영에 관한 사항
19. 기술지도선 운영 및 관리
20. 배합사료 직불제에 관한 사항
21.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22. 현장애로 기술 개발

제46조의4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5항을 삭제한다.

④ 수산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산생물 병성감정기관 운영
4.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 관한 사항
5. 수산물 방사능검사에 관한 사항
6. 수산생물 질병 및 방역 지도에 관한 사항
7.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8. 패류독소 검사에 관한 사항
9.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 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소통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인력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 복지보건국장, 여성가족국장 ”을 “행정국장, 복지여성국장, 보건의료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경제기업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균형발전 업무담당국장”을 “균형발전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호중 “균형발전 업무담당국장”을 “균형발전단장”으로 한다.

제6조제3호중 “균형발전 업무담당국장”을 “균형발전단장”으로 한다.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별표 2]

119안전센터 등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

서별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진주소방서	119구조대	진주시 동진로 249	진주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상대119안전센터	진주시 동진로 249	진주시 상대·하대·상평동 일원
	중앙119안전센터	진주시 북장대로64번길 14	진주시 성북·중앙·상봉동 일원
	천전119안전센터	진주시 강남로167번길 16	진주시 천전동, 내동면 일원
	평거119안전센터	진주시 순환로 565	진주시 평거·이현·신안·관문동 일원
	수곡119지역대	진주시 수곡면 곤수로 899	진주시 명석·수곡·대평면 일원
	문산119안전센터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79	진주시 충무공동, 문산읍, 금곡·진성면 일원
	반성119지역대	진주시 일반성면 동부로 2060번길 21	진주시 지수·일반성·이반성·사봉면 일원
	금산119안전센터	진주시 금산면 송백로 477	진주시 초장동, 금산·집현·미천·대곡면 일원
	정촌119안전센터	진주시 정촌면 뿌리산단로 2	진주시 가호동, 정촌면 일원
통영소방서	119구조대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49	통영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소방정대	통영시 도남로 257	한산·사량·육지면(육지도 제외), 경상남도 남해안 일원
	죽림119안전센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49	통영시 도산·용남·광도면 일원
	무전119안전센터	통영시 원문로 71	통영시 무전·북신·정량동 일원
	서호119안전센터	통영시 중앙로 91-8	통영시 도천·명정·중앙동 일원
	도남119안전센터	통영시 도남로 257	통영시 미수동, 봉평동, 산양읍 일원
	육지119지역대	통영시 육지면 육지일주로 95-11	통영시 육지면(육지도) 일원
사천소방서	119구조대	사천시 진삼로 212	사천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삼천포119안전센터	사천시 동금로 51	사천시 동서·선구·동서금·벌용·향촌·남양동 일원
	사천119안전센터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사천시 사천읍, 정동·축동면 일원
	사남119안전센터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53	사천시 용현·사남면 일원
	곤양119안전센터	사천시 곤양면 곤북로 64	사천시 곤양·곤명 일원
	서포119지역대	사천시 서포면 서포로 221	사천시 서포면 일원
김해동부소방서	119구조대	김해시 김해대로 2507	김해동부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삼정119안전센터	김해시 김해대로 2507	김해시 활천·삼안·불암동 일원
	동상119안전센터	김해시 구지로 179	김해시 동상·회현·부원동 일원
	내외119안전센터	김해시 내외로 77	김해시 내외·칠산서부동 일원
	상동119안전센터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637	김해시 상동면 일원
	생림119안전센터	김해시 생림면 봉림로 106	김해시 생림면 일원
	북부119안전센터	김해시 해반천로 166	김해시 북부동 일원
	대동119안전센터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41번길 19	김해시 대동면 일원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서별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김 해 서 부 소 방 서	119구조대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 730	김해서부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진례119안전센터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 730	김해시 진례면 일원
	장유119안전센터	김해시 번화2로 12	김해시 장유1·장유2동 일원
	진영119안전센터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4	김해시 진영읍 일원
	주촌119안전센터	김해시 주촌면 주선로 29	김해시 주촌면 일원
	한림119안전센터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401번길 50	김해시 한림면 일원
	올하119안전센터	김해시 올하4로 112	김해시 장유3동 일원
밀 양 소 방 서	119구조대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66	밀양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교동119안전센터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66	밀양시 내일·내이·교·삼문동,부북·상동면일원
	가곡119안전센터	밀양시 용두로 5	밀양시 가곡동, 상남면 일원
	하남119안전센터	밀양시 하남읍 명례로 108	밀양시 하남읍, 초동면 일원
	삼랑진119안전센터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16-3	밀양시 삼랑진읍 일원
	산동119안전센터	밀양시 산외면 단산길 2-7	밀양시 산외·산내·단장면 일원
	무안119안전센터	밀양시 무안면 사명로 541	밀양시 무안·청도면 일원
거 제 소 방 서	119구조대	거제시 진목로 1	거제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옥포119안전센터	거제시 진목로 1	거제시옥포1·옥포2·아주동 일원
	장승포119안전센터	거제시 능포로 77	거제시 장승포·능포동 일원
	신현119안전센터	거제시 계룡로 52	거제시 고현(13~14통, 19~31통, 33통제외)·상문·장평동 일원
	거제119안전센터	거제시 거제면 거제남서로 3429	거제시 거제·둔덕면 (상문·시목·산방리) 일원
	연초119안전센터	거제시 연초면 거제북로 1	거제시 연초면, 수양·고현동(13~14통, 19~31통, 33통) 일원
	하청119지역대	거제시 하청면 사환2길 86	거제시 하청·장목면 일원
	남부119안전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저구해안길 16	거제시 동부·남부·일운면 일원
	사동119안전센터	거제시 사동면 덕호해안길 63	거제시 사동·둔덕면 (상문·시목·산방리 제외) 일원
양 산 소 방 서	동부119출장소	양산시 덕명로 230	양산시 소주·서창·평산·덕계동 일원
	119구조대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719	양산소방서 관할 구역(소주·서창·평산·덕계동 제외) 일원
	동부119구조대	양산시 덕명로 230	양산시 소주·서창·평산·덕계동 일원
	범어119안전센터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719	양산시 물금읍(물금·가촌리·중산리 제외), 강서동 일원
	원동119지역대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1596	양산시 원동면 일원
	중앙119안전센터	양산시 신기로 13	양산시 중앙(북부·명곡동)·삼성동 일원
	웅상119안전센터	양산시 웅상대로 1120	양산시 소주·서창동 일원
	하북119안전센터	양산시 하북면 양산대로 2255-38	양산시 하북면 일원
	중부119안전센터	양산시 양산역6길 27	양산시 중앙동(중부·남부·다방동), 양주동, 동면(가산리 제외) 일원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서별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양 산 소 방 서	평산119안전센터	양산시 내연4길 9	양산시 평산·덕계동 일원
	상북119안전센터	양산시 석계로 37	양산시 상북면 일원
	물금119안전센터	양산시 물금읍 물금 1길 11	양산시 물금읍(물금·가촌리·증산리), 동면(가산리) 일원
의 령 소 방 서	119구조대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08-17	의령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의령119안전센터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08-17	의령군 의령읍, 화정·가례·칠곡·대의면 일원
	부림119안전센터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666	의령군 부림·낙서·봉수·궁류면 일원
	정곡119안전센터	의령군 정곡면 의합대로 984-12	의령군 유곡·용덕·정곡·지정면 일원
함 안 소 방 서	119구조대	함안군 가야읍 선왕길 59	함안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가야119안전센터	함안군 가야읍 선왕길 59	함안군 가야읍, 함안·산인·여항면 일원
	대산119지역대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940	함안군 대산면 일원
	칠원119안전센터	함안군 칠원읍 용산2길 121	함안군 칠원읍, 칠북면 일원
	칠서119지역대	함안군 칠서면 신계길 69	함안군 칠서면 일원
	군북119안전센터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 760	함안군 군북면 일원
	범수119지역대	함안군 범수면 범수로 220	함안군 범수면 일원
창 녕 소 방 서	119구조대	창녕군 대지면 우포2로 1097	창녕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창녕119안전센터	창녕군 대지면 우포2로 1097	창녕군 창녕읍, 고암·대지·유어면 일원
	대합119지역대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3길 43	창녕군 성산·대합면 일원
	이방119지역대	창녕군 이방면 뒷골길 5	창녕군 이방면 일원
	남지119안전센터	창녕군 남지읍 동포로 64	창녕군 남지읍, 장마면 일원
	영산119안전센터	창녕군 영산면 영산장마로 697	창녕군 영산·계성·도천면 일원
	부곡119안전센터	창녕군 부곡면 원양로 184	창녕군 부곡·길곡면 일원
고 성 소 방 서	119구조대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670	고성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고성119안전센터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670	고성군 고성읍, 대가·상리면 일원
	하일119지역대	고성군 하일면 학동로 9	고성군 삼산·하일·하이면 일원
	회화119안전센터	고성군 회화면 영회로 2211	고성군 구만·회화·마암면 일원
	영오119지역대	고성군 영오면 문산로 14-10	고성군 영오·개천·영현면 일원
	거류119안전센터	고성군 거류면 봉암1길 9	고성군 동해·거류면 일원
남 해 소 방 서	119구조대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81	남해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남해119안전센터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81	남해군 남해읍, 서·고현·설천면 일원
	남면119지역대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788-10	남해군 남면 일원
	삼동119안전센터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795	남해군 삼동·창선·이동면 일원
	미조119안전센터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486번길 19	남해군 미조·상주면 일원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서별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하 동 소 방 서	119구조대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15	하동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금성119안전센터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15	하동군 금성·금남·고전면 일원
	하동119안전센터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169	하동군 하동읍, 적량면 일원
	횡천119지역대	하동군 횡천면 횡보길 6	하동군 횡천·청암면 일원
	진교119안전센터	하동군 진교면 진양로 27	하동군 진교·양보면 일원
	옥중119지역대	하동군 옥중면 옥단로 856-6	하동군 옥중·북천면 일원
	화개119안전센터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58	하동군 화개·악양면 일원
산 청 소 방 서	119구조대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76-7	산청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산청119안전센터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76-7	산청군 산청읍, 오부·생초·금서·차황면 일원
	단성119안전센터	산청군 단성면 사직단로 447-8	산청군 단성·신안·삼장·시천면 일원
	신등119지역대	산청군 신등면 신차로 492	산청군 생비량·신등 일원
	산악구조대	산청군 시천면 남명2길 7	산청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함 양 소 방 서	119구조대	함양군 함양읍 인당강변길 58	함양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함양119안전센터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161-41	함양군 함양읍, 마천·휴천·유림면 일원
	백전119지역대	함양군 백전면 구산대안로 10-5	함양군 백전·병곡면 일원
	안의119안전센터	함양군 안의면 금성길 19	함양군 안의·지곡·수동면 일원
	서상119지역대	함양군 서상면 대남로 16	함양군 서상·서하면 일원
	산악구조대	함양군 마천면 마천삼정로 28	함양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거 창 소 방 서	119구조대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4	거창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대평119안전센터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4	거창군 거창읍, 남상면 일원
	신원119지역대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101	거창군 신원면 일원
	웅양119지역대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1456	거창군 주상·웅양면 일원
	위천119안전센터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321	거창군 위천·마리·북상·고제면 일원
	가조119안전센터	거창군 가조면 마상3길 32	거창군 남하·가조·가북면 일원
함 천 소 방 서	119구조대	합천군 합천읍 인덕로 2453	합천소방서 관할 구역 일원
	합천119안전센터	합천군 합천읍 인덕로 2453	합천군 합천읍, 율곡·대양·대병·용주면 일원
	초계119안전센터	합천군 초계면 양동로 6-16	합천군 초계·적중·쌍책면 일원
	덕곡119지역대	합천군 덕곡면 읍지2길 13-9	합천군 청덕·덕곡면 일원
	북부119안전센터	합천군 야로면 월광2길 5	합천군 묘산·봉산·가야(구원리, 치인리 제외)·야로면 일원
	해인사119지역대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로 1836	합천군 가야면(구원리, 치인리) 일원
	삼가119안전센터	합천군 삼가면 삼가로 287	합천군 삼가·가회·쌍백면 일원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보좌기관) ① 도지사 밑에 <u>소통담당관 및 홍보담당관</u>을 둔다.</p> <p>② ~ ④ (생략)</p> <p>제5조(소통담당관) ① <u>소통담당관</u>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p> <p>② <u>소통담당관</u>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p> <p>1. ~ 8. (생략)</p> <p><u><신 설></u></p>	<p>제4조(보좌기관) ① ----- <u>공보관, 홍보담당관 및 미래전략추진단</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공보관) ① <u>공보관</u> -----.</p> <p>② <u>공보관</u> -----.</p> <p>1. ~ 8. (현행과 같음)</p> <p><u>제5조의6(미래전략추진단) ① 미래전략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u></p> <p><u>② 미래전략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u></p> <p><u>1. 도정 정책개발·연구</u></p> <p><u>2. 미래전략 과제 발굴 및 미래유망산업 대응전략 구상</u></p> <p><u>3. 경남 미래비전 수립 및 관리, 미래전략 네트워크 구성</u></p> <p><u>4. 주요 정책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u></p> <p><u>5. 국내의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도정 반영</u></p>
<p>제6조의19(창업지원단) ① ~ ② (생략)</p> <p>③ <u>창업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경제부지사를 보좌한다.</u></p> <p>1. ~ 6. (생략)</p> <p><u><신 설></u></p>	<p>제6조의19(창업지원단)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벤처기업 육성 지원</u></p>
<p>제7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p> <p>① <u>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교육인재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u>을 둔다.</p> <p>②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u>예산담당관, 교육인재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u>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법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p>	<p>제7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p> <p>① -----<u>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u>-----.</p> <p>② -----, <u>예산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u>-----.</p>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현 행	개 정 안
<p>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9. (생 략)</p> <p>10. <u>도정 종합개발계획 수립·조정 및 도정의 정책 개발·연구</u></p> <p>11. (생 략)</p> <p>12. 주요 정책 관련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p> <p>13. ~ 18. (생 략)</p> <p>④ ~ ⑧ (생략)</p> <p>⑨ <u>교육인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u>교육정책 및 교육청 정책협의에 관한 사항</u></p> <p>2. <u>교육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u></p> <p>3. <u>교육혁신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u></p> <p>4. <u>시군 맞춤형 교육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u></p> <p>5. <u>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u></p> <p>6. <u>도립대학 및 도내 대학지원, 산학협력 총괄 등에 관한 사항</u></p> <p>7. <u>대학생 학자금 이자 및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u></p> <p>8. <u>남명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u></p> <p>9. <u>외국인 유학생의 도내 대학 유치·알선 지원</u></p> <p>10. <u>대학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u></p> <p>11. <u>대학 평생교육지원체제 지원에 관한 사항</u></p> <p>12. <u>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u></p> <p>13. <u>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u></p> <p>14. <u>그 밖에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u></p> <p>⑩ (생 략)</p> <p>제7조의4(산업통상국에 두는 과) ① <u>산업통상국에 산업정책과, 전략산업과, 미래산업과, 에너지산업과 및 국제통상과를 둔다.</u></p> <p>② <u>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하고, 산업정책과장, 전략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및 국제통상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u></p> <p>③ <u>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20. (생 략)</p> <p>21. <u>ICT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총괄</u></p>	<p>③ -----.</p> <p>1. ~ 9. (현행과 같음)</p> <p><u>10. 도정 종합개발계획 수립·조정</u></p> <p>11.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13. ~ 18. (현행과 같음)</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⑩ (현행과 같음)</p> <p>제7조의4(산업국에 두는 과) ①<u>산업국에 산업정책과, 전략산업과, 우주항공산업과, 미래산업과 및 에너지산업과-----.</u></p> <p>② <u>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산업정책과장, 전략산업과장, 우주항공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및 에너지산업과장----- 임명한다.</u></p> <p>③ -----.</p> <p>1.~ 20. (현행과 같음)</p> <p><삭 제></p>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현 행	개 정 안
<p>22.정보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p> <p>23.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지원</p> <p>24. 삭제</p> <p>25. ICT 및 소프트웨어 산업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p> <p>④ 전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20. (생략)</p> <p><신설></p> <p>⑤ 삭제</p> <p><신설></p> <p>⑥ 미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5.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⑦ ~ ⑧ (삭제)</p> <p>⑨ 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20. (생략)</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④ 주력산업과장-----.</p> <p>1. ~ 20. (현행과 같음)</p> <p>2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⑥ 우주항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우주 및 항공산업 육성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p> <p>2. 우주 및 항공산업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p> <p>3. 우주 및 항공산업 특화단지 조성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p> <p>4. 우주 및 항공산업 유치에 관한 사항</p> <p>5. 우주 및 항공산업 인프라, 연구개발, 이벤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p> <p>6. 우주항공청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p> <p>⑦ 미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5. (현행과 같음)</p> <p>16. ICT융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p> <p>17. 정보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p> <p>18.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지원</p> <p>19. ICT 및 소프트웨어 산업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p> <p>20.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p> <p>21. 반도체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p> <p>22. AI 및 이차전지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p> <p>⑩ 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20. (현행과 같음)</p>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현 행	개 정 안
<p>⑩ 국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시장조사 및 개척사업 총괄 2. 무역사절단 및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3. 중소기업제품 수출상담 지원 4. 무역진흥정책 종합기획·조정 5. 수출진흥, 수출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무역정보 및 해외시장 동향수집 7.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확인 등에 관한 사항 8. 국제교류 협력 총괄 조정 9.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 10. 공무국외여행 관련 사항 및 외국인 영접 안내 11. 교민행정의 종합 기획 12. 국제관계 의진행사 지원 13. 자치단체 국제화 시책 개발·연구 14. 민간단체 국제교류사업 지원 15. 도정의 국제 홍보 및 자료수집 <p>제7조의6(경제기업국에 두는 과)</p> <p>① 경제기업국에 경제인력과, 기업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및 사회경제노동과를 둔다.</p> <p>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인력과장, 기업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및 사회경제노동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p> <p>③ 경제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자리 및 산업인력 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 5. 삭제 6.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7.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9. 기업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0. 취업 알선,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공기관 인턴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2. 일자리 공시제에 관한 사항 13.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14.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총괄 15.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16. 일자리 영향평가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17. ~ 19. 삭제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7조의6(경제통상국에 두는 과)</p> <p>① 경제통상국에 경제기업과, 국제통상과, 소상공인정책과 및 사회경제노동과-----.</p> <p>② -----, 경제기업과장, 국제통상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및 사회경제노동과장-----.</p> <p>③ 경제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단위 경제발전 계획의 수립·지도 3. 지역경제발전방안 연구 및 지원 4. 경제활동 관련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5. 서민금융 안정 및 지원, 대부업 관리에 관한 사항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7. 물가 및 소비자보호 종합대책 수립 조정 8. 기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조정 9.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10.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 및 계열화 촉진사업 추진 12.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13.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14.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관련 사항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현 행	개 정 안
<p>20. 지역단위 경제발전 계획의 수립·지도</p> <p>21. 지역경제발전방안 연구 및 지원</p> <p>22. 지역단위 경제동향 및 경제지표 분석 관리</p> <p>23. 경제활동 관련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p> <p>24. 서민금융 안정 및 지원, 대부업 관리에 관한 사항</p> <p>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p> <p>26. 물가 및 소비자보호 종합대책 수립 조정</p> <p>27. 경제자유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p> <p>④ 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2. 삭제</p> <p>3. 기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조정</p> <p>4. 벤처기업 육성 지원</p> <p>5.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p> <p>6.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p> <p>7.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 및 계열화 촉진사업 추진</p> <p>8.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p> <p>9.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p> <p>10.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관련 사항</p> <p>11. 기업활동(경제행정) 규제완화 및 애로해소협의회 운영</p> <p>12. 수출입 등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p> <p>13. 기업방문 애로 청취 등 기업애로 해소에 관한 사항</p> <p>14. 기업활동 관련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p> <p>15. 지역 산업디자인 육성 종합계획 수립</p> <p>16.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및 육성</p> <p>17. 지역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지원</p> <p>⑤ ~ ⑨ (생 략)</p> <p>제8조의3(자치행정국에 두는 과)</p> <p>① <u>자치행정국</u>에 행정과,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 및 도민봉사과를 둔다.</p> <p>② (생 략)</p> <p>③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3. (생 략)</p> <p>14. 지방분권 업무 총괄</p> <p>15. ~ 32. (생 략)</p>	<p>15. <u>기업활동(경제행정) 규제완화 및 애로해소협의회 운영</u></p> <p>16. <u>수출입 등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u></p> <p>17. <u>기업방문 애로 청취 등 기업애로 해소에 관한 사항</u></p> <p>18. <u>기업활동 관련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u></p> <p>19. <u>지역 산업디자인 육성 종합계획 수립</u></p> <p>20. <u>산업디자인 개발지원 및 육성</u></p> <p>21. <u>지역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지원</u></p> <p>22. <u>경제자유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u></p> <p>④ <u>국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u>해외시장조사 및 개척사업 총괄</u></p> <p>2. <u>무역사절단 및 해외진시·박람회 참가 지원</u></p> <p>3. <u>중소기업제품 수출상담 지원</u></p> <p>4. <u>무역진흥시책 종합기획·조정</u></p> <p>5. <u>수출진흥, 수출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u></p> <p>6. <u>농수산물 해외 수출 마케팅 업무 총괄</u></p> <p>7. <u>국내외 무역정보 및 해외시장 동향수집</u></p> <p>8. <u>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확인 등에 관한 사항</u></p> <p>9. <u>국제교류 협력 총괄 조정</u></p> <p>10. <u>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u></p> <p>11. <u>공무국외여행 관련 사항 및 외국인 영접 안내</u></p> <p>12. <u>교민행정의 종합 기획</u></p> <p>13. <u>국제관계 의전행사 지원</u></p> <p>14. <u>자치단체 국제화 시책 개발·연구</u></p> <p>15. <u>민간단체 국제교류사업 지원</u></p> <p>16. <u>도정의 국제 홍보 및 자료수집</u></p> <p>⑤ ~ ⑨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3(행정국에 두는 과)</p> <p>① <u>행정국</u>에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1. ~ 13.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15. ~ 32. (현행과 같음)</p>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현 행	개 정 안
<p>④ ~ ⑧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3(교육청년국에 두는 과)</p> <p>① <u>교육청년국에 교육인재과, 청년인구과 및 인력지원과를 둔다.</u></p> <p>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교육인재과장, 청년인구과장 및 인력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p> <p>③ 교육인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교육청년국 소관 행정 총괄에 관한 사항</u> 2. <u>교육정책 및 교육청 정책협약에 관한 사항</u> 3. <u>교육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u> 4. <u>교육혁신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u> 5. <u>시군 맞춤형 교육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u> 6. <u>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u> 7. <u>도립대학 및 도내 대학지원, 산학협력 총괄 등에 관한 사항</u> 8. <u>대학생 학자금 이자 및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u> 9. <u>남명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u> 10. <u>외국인 유학생의 도내 대학 유치·알선 지원</u> 11. <u>대학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u> 12. <u>대학 평생교육지원체제 지원에 관한 사항</u> 13. <u>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u> 14. <u>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u> 15. <u>그 밖에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u> <p>④ 청년인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u> 2. <u>청년정책 신규시책 발굴 추진</u> 3. <u>경상남도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 네트워크 구성 운영</u> 4. <u>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u> 5. <u>청년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된 사항</u> 6. <u>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u> 7. <u>인구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u> 8. <u>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u> 9. <u>인구소멸대응기금에 관한 사항</u> <p>⑤ 인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일자리 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 2. <u>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u> 3. <u>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u> 4. <u>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u> 5. <u>기업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u>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해양수산물에 두는 과)</p> <p>① 해양수산물에 해양항만과, <u>수산자원과</u> 및 어촌발전과를 둔다.</p> <p>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해양항만과장 및 어촌발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u>수산자원과</u>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p> <p>③ 해양항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1의2. (생 략) 2. 어촌계 지도·육성 및 수산단체 지도 3. 수산안전기술원 운영관리·지도 4. ~ 6. (생 략) 7. 수산물 수출 종합계획 수립 8. 수산물 가공·유통 등 수산식품산업 및 수산물안전에 관한 사항 9. 수산물 시장개척 및 유통 알선·지도 10. ~ 26. (생 략) <p>④ 수산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p><u><신 설></u></p> <p><u><신 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 7. (생 략) <p><u><신 설></u></p>	<p>6.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7. 공공기관 인턴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p> <p>8. 일자리 공시제에 관한 사항</p> <p>9.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p> <p>10.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총괄</p> <p>11.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p> <p>12. 일자리 영향평가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p> <p>13. <u>산업인력 수급 등 산업인력정책,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u></p> <p>14. <u>외국인인력 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p> <p>15. <u>외국인노동자 지원계획, 입국비자 등에 관한 사항</u></p> <p>16. <u>광역비자 등 비자 시범사업, 이민정책 등에 관한 사항</u></p> <p>제10조(해양수산물에 두는 과)</p> <p>① -----, <u>수산정책과</u>----- -----.</p> <p>② -----, -----, -----, <u>수산정책과</u>-----.</p> <p>③ -----.</p> <p>1. ~ 1의2.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삭 제></u></p> <p>4. ~ 6.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10 ~ 26. (현행과 같음)</p> <p>④ <u>수산정책과</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1의2. 어촌계 지도·육성 및 수산단체 지도 1의3. 수산안전기술원 운영관리·지도 <p>2. ~ 7. (현행과 같음)</p> <p>7의2. 수산물 수출 종합계획 수립</p>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신 설></p> <p>8. ~ 13. (생 략)</p> <p>14. 수산자원조성사업 계획 수립</p> <p>15.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관한 사항</p> <p>16. 인공어초 시설사업</p> <p>17. (생 략)</p> <p>⑤ 어촌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6. (생 략)</p> <p>7. 어촌 및 어촌관광자원 개발사업</p> <p><신 설></p> <p><신 설></p> <p>8. 해수욕장에 관한 사항</p> <p>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p> <p>10. 해양레저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p> <p>11. 해양레저산업 육성전략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p> <p>12. 해양레저산업 기술 제고에 관한 사항</p> <p>13. 해양레포츠 및 요트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p> <p>14. ~ 15. (생 략)</p> <p>16. 해양치유 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p> <p>17.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11조(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p> <p>①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관광개발과, 체육지원과 및 전국체전기획단을 둔다.</p>	<p>7의3. 수산물 가공·유통 등 수산식품산업 및 수산물안전에 관한 사항</p> <p>7의4. 수산물 시장개척 및 유통 앞선·지도</p> <p>8. ~ 13.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17. (현행과 같음)</p> <p>⑤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어촌 개발사업</p> <p>7의2. 귀어 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7의3.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14. ~ 15.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17. (현행과 같음)</p> <p>18. 수산자원조성사업 계획 수립</p> <p>19.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관한 사항</p> <p>20. 인공어초 시설사업</p> <p>제11조(문화체육국에 두는 과)</p> <p>① 문화체육국에 -----, 체육지원과 및 전국체전기획단-----.</p>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현 행	개 정 안
<p>5.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운영</p> <p>6. 민관협력사업 통합수익관리법인 운영 및 지원</p> <p>7. 지리산 및 바다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사항</p> <p>8. 남해안권, 지리산권, 백두대간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p> <p>9. 남해안 선도사업에 관한 사항</p> <p>⑦ ~ ⑧ (생략)</p> <p>제12조(복지보건국에 두는 과) ①복지보건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및 식품의약과를 둔다.</p> <p>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보건행정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및 식품의약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p> <p>③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4. ~ 15. (생략)</p> <p>16. ICT연계 스마트 복지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p> <p>④ <u>노인복지과</u>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노인복지 및 보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p> <p>1의2. (생략)</p> <p>1의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p> <p>1의4. 보훈단체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p> <p><u><신설></u></p> <p>2. ~ 11. (생략)</p> <p>⑤ (생략)</p>	<p>⑦ ~ ⑧ (현행과 같음)</p> <p>제12조(복지여성국에 두는 과) ①복지여성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및 보육정책과-----.</p> <p>② -----, 복지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및 보육정책과장-----.</p> <p>③ -----.</p> <p>1. ~ 3. (현행과 같음)</p> <p><u>3의2. 보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u></p> <p><u>3의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u></p> <p><u>3의4. 보훈단체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u></p> <p>4. ~ 15.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④ <u>노인정책과</u>장-----.</p> <p>1. 노인복지에 관한 -----</p> <p>1의2.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u><삭제></u></p> <p>1의5. ICT연계 스마트 복지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p> <p>2. ~ 11.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현 행	개 정 안
<p><u>⑥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 보건소 등(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도·감독 3. 건강증진 업무 종합기획 및 추진 4. 건강관리협회 지도 5. 정신보건 업무 종합 기획 및 추진 6. 정신보건 시설 인가·지도·관리 7. 지방의료원 지도·감독 8. 의료취약지역(섬)에 대한 병원선 운영·관리 9.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p><u>⑦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방역 등 감염병 관리에 관한 전반 계획 수립·시행 2. 생활방역 교육 및 홍보 3. 감염병 이후 중·장기 제도개선 이행과제 점검 총괄 4.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역학조사 계획 수립 5. 감염병 유행 및 집단발생 대응 6. 신종감염병 및 해외유입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 및 예방관리 7. 결핵·한센병·성병 등 감염성 질환의 예방 관리 및 방역 8. 방역·소독 지원에 관한 사항 9. 감염병 관련 단체 지도·관리 10. 감염병 통계 관리 및 유행실태 분석 11.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및 격리병상 운영·관리 12. 선별진료소 운영 및 지원 13. 공공의료기관 운영 등 지도·감독 관리 14.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p><u>⑥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정책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2.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3. 양성평등기금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정책 연구기관 지도 감독 6. 여성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7. 여성인권 및 지위향상 정책 추진 8. 가정·성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9.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0.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11. 양성평등정책 분석 및 평가 12. 여성(복지)회관 운영 지도 13.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14. 여성일자리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건강가정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16. 가정 및 가족문제 예방·해결 등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7. 한부모가정 및 미혼모 자립 지원 18.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9.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통합에 관한 사항 <p><u>⑦ 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산지원시책 추진 2. 모자보건사업계획 수립 추진 3.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4.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원 지도·감독 5. 직장 및 민간 보육시설 설치 지원 6.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7.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아동 보호 관리 8. 불우아동 결연기금 관리 9.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및 보호관리 10. 아이돌봄 원스톱 지원 및 돌봄공백해소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육성사업의 종합 기획·추진 12. 청소년시설 설치 및 지원 1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14.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 16.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현 행	개 정 안
<p>⑧ <u>식품의약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식품 및 의약품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u> <u>2.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u> <u>3. 국민건강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u> <u>4.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u> <u>5. 식품제조업소 및 소비자 유통식품 지도·감독</u> <u>6.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감독</u> <u>7. 부정불량식품, 불량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 등 지도·감독</u> <u>8. 의료법인 허가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u> <u>9. 마약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u> <u>9의2.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u> <u>10. 지역응급의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u> <u>11.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에 관한 사항</u> <u>12. 한방의료기관 및 한약업소 지도·감독</u> <p>제12조2(여성가족국에 두는 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① 여성가족국에 여성정책과,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과 및 청년정책과를 둔다.</u> <u>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여성정책과장, 가족지원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및 청년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u> <u>③ 여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여성정책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u> <u>2.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u> <u>3. 양성평등기금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u> <u>4. 여성단체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u> <u>5. 여성정책 연구기관 지도 감독</u> <u>6. 여성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u> <u>7. 여성인권 및 지위향상 정책 추진</u> <u>8. 가정·성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u> <u>9.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u> <u>10.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u> <u>11. 양성평등정책 분석 및 평가</u> <u>12. 여성(복지)회관 운영 지도</u> <u>13.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u> <u>14. 여성일자리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u>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7. 청소년 국제교류사업</u> <u>18.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u> <u>19.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u> <p><삭 제></p> <p><삭 제></p>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현 행	개 정 안
<p>④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가정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2. 가정 및 가족문제 예방·해결 등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정 및 미혼모 자립 지원 4. 출산지원시책 추진 5. 모자보건사업계획 수립 추진 6.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7.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원 지도·감독 8. 직장 및 민간 보육시설 설치 지원 9.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통합에 관한 사항 <p>⑤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2.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아동 보호 관리 3. 불우아동 결연기금 관리 4.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및 보호관리 5. 아이돌봄 원스톱 지원 및 돌봄공백해소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육성사업의 종합 기획·추진 7. 청소년시설 설치 및 지원 8.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9.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 11.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12.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13.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p>⑥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2. 청년정책 신규시책 발굴 추진 3. 경상남도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 네트워크 구성 운영 4.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된 사항 <p><신 설></p> <p><신 설></p>	<p>제12조4(보건의료국에 두는 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보건의료국에 보건행정과, 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및 식품위생과</u>-----.. ② -----, <u>보건행정과장, 의료정책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및 식품위생과장</u>-----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③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 보건소 등(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도·감독 3. 건강증진 업무 종합계획 및 추진 4. 건강관리협회 지도 5. 정신보건 업무 종합 계획 및 추진 6. 정신보건 시설 인가·지도·관리 7. 공공병원 설립 등에 관한 사항 8. 의료취약지역(섬)에 대한 병원선 운영·관리
<p><신 설></p>	<p>④ 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 및 의약품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방의료원 지도·감독 3.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의료기관 운영 등 지도·감독 관리 5.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6.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감독 7. 불량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 등 지도·감독 8. 의료법인 허가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9. 마약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10.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1. 지역응급의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2.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한방의료기관 및 한약업소 지도·감독
<p><신 설></p>	<p>⑤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방역 등 감염병 관리에 관한 전반 계획 수립·시행 2. 생활방역 교육 및 홍보 3. 감염병 이후 중·장기 제도개선 이행과제 점검 총괄 4.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역학조사 계획 수립 5. 감염병 유행 및 집단발생 대응 6. 신종감염병 및 해외유입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 및 예방관리 7. 결핵·한센병·성병 등 감염성 질환의 예방 관리 및 방역 8. 방역·소독 지원에 관한 사항 9. 감염병 관련 단체 지도·관리 10. 감염병 통계 관리 및 유행실태 분석 11.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및 격리병상 운영·관리 12. 선별진료소 운영 및 지원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13조(균형발전국에 두는 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균형발전국에 균형정책과, 우주항공산업과 및 지역발전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균형정책과장, 우주항공산업과장 및 지역발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균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부지역본부 소관 행정의 총괄에 관한 사항 2. 균형발전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예 관한 사항 3. 서부권 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4. 서부청사 행정지원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5. 서부지역본부 내 각종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서부지역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8. 본청 소관 민원의 서부청 연계 처리에 관한 사항 19. 서부청사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20. 인구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1.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2. 인구소멸대응기금에 관한 사항 23. 균형발전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공공의료기관 운영 등 지도·감독 관리 14.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p>⑥ 식품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3. 국민건강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4.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 5. 식품제조업소 및 소비자 유통식품 지도·감독 <p><u><삭 제></u></p>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현 행	개 정 안
<p>24. 균형발전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p> <p>25. 정부 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사항</p> <p>26. 균형발전사업평가 및 경상남도 균형발전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p> <p>27. 지역혁신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p> <p>28.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p> <p>29. 지역균형발전 대상지 선정 및 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p> <p>30. 서부권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p> <p>31. 서부경남 시·군 전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p> <p>32. 낙후지역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p> <p>33. 소도읍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p> <p>34. 거점지역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p> <p>35.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p> <p>36.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p> <p>37. 동서통합지대 조성에 관한 사항</p> <p>38. 내륙권(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p> <p>④ 삭제</p> <p>⑤ 삭제</p> <p>⑥ 삭제</p> <p>⑦ 우주항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우주 및 항공산업 육성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p> <p>2. 우주 및 항공산업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p> <p>3. 우주 및 항공산업 특화단지 조성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p> <p>4. 우주 및 항공산업 유치에 관한 사항</p> <p>5. 우주 및 항공산업 인프라, 연구개발, 이벤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p> <p>6. 우주항공청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p> <p>⑧ 지역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사항</p> <p>2. 혁신도시 시즌2 운영에 관한 사항</p> <p>3.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p> <p>4.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p> <p>5.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에 관한 사항</p> <p>6.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총괄</p> <p>7.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협력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p>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현 행	개 정 안
<p>8. 도내 공공기관 이전 계획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9. 초전신도심 개발계획 수립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10. 농업기술원 등 청사 이전 추진에 관한 사항</p> <p>11. 농업기술원 청사 이전 관련 용역사업, 예산 등 행정 절차 추진 총괄</p> <p>12. 서부청사 기능 조정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제13조의2(관광개발국에 두는 과) ① 관광개발국에 관광정책과, 남해안과 및 관광개발과를 둔다.</u></p> <p><u>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관광정책과장, 남해안과장 및 관광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u></p> <p><u>③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관광행정 및 관광개발 종합기획·조정</u> <u>2.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u> <u>3.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u> <u>4. 관광지 지정·개발 및 민간유치계획 수립·추진</u> <u>5.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u> <u>6. 관광사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u> <u>7. 관광안내 및 홍보</u> <u>8. 관광객 유치 및 관광루트 개발</u> <u>9. 관광중사원 지도·교육</u> <u>10. 관광수용태세 관련 지원업무</u> <u>11. 종합 유원시설업 및 그 밖에 유기업장에 관한 사항</u> <u>12. 국내외 대규모 관광행사 유치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u>13. 관광상품·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u> <u>14. 국내외 관광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u> <u>15.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사항</u> <u>16. 문화예술 및 관광관련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u> <u>17. 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u> <u>18. 국내외 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u> <u>19. 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시설관리 포함)</u> <u>20. 국내외 컨벤션 마케팅 및 홍보</u> <u>21. 한국국제기계박람회 개최</u> <u>22. 국내외 회의·이벤트 발굴, 유치 및 개최 지원</u> <u>23. 컨벤션 뷰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u>24. 그 밖에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u>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④ 남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해안관광 기반조성 총괄 기획·조정 및 계획 수립 2. 남해안개발청 설립 추진 계획 수립 및 용역 추진, 대외 협력 3. 항공관광, 크루즈 관광 분야 기획·지원, 인프라 구축 4. 어촌관광자원 개발사업 5.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및 남해안 선도사업에 관한 사항 6.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및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조성에 관한 사항 7.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해양레저산업 클러스터 조성, 육성전략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0. 해양레포츠 및 요트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해수욕장에 관한 사항 12. 해양치유 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섬 연결도로 및 연계 도로망 구축 계획 수립·추진 14. 섬 연결도로 예타(먼제)사업 반영 및 국비 지원 관련 업무 15. 섬 연결 해상교량 관광자원화 기획 및 인프라 구축 지원 16. 남해안아일랜드하이웨이 구축 시군·유관기관 협력 17. 남해안아일랜드하이웨이 연계 주변 관광개발 인프라 구축 지원 18. 섬 관광 활성화 사업 발굴·추진, 제도 개선 발굴·건의
<p><신 설></p>	<p>⑤ 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역권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2. 관광프로젝트 사업 기획·발굴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3. 관광단지 지정·개발 및 민간유치계획 수립·추진 4. 관광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관광자원 개발사업 민자 등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목관광단지개발사업 추진 7.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 기반시설 확충 8.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운영 9. 민관협력사업 통합수익관리법인 운영 및 지원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의2(소방본부에 두는 과) ① ~ ② (생 략)</p> <p>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7. (생 략)</p> <p>8. 의무소방원 임용에 관한 사항</p> <p>9.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p> <p>10. ~ 17. (생 략)</p> <p>④ ~ ⑦ (생 략)</p> <p>⑨ <u>119특수구조단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2. (생 략)</p> <p>제18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1. ~ 5.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제30조의2(하부조직) ① ~ ② (생 략)</p> <p>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9. (생 략)</p> <p>10. 의무소방원 임용에 관한 사항</p> <p>11.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p> <p>④ ~ ⑥ (생 략)</p> <p>제4장 제1절 서부지역본부</p> <p>제35조의2(본부장) <u>서부지역본부장</u>은 지방이사관으로 임명한다.</p> <p><신 설></p> <p><신 설></p>	<p><u>10. 지리산 및 바다케이볼카 설치에 관한 사항</u></p> <p><u>11. 지리산권, 백두대간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u></p> <p>제15조의2(소방본부에 두는 과)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1. ~ 7.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10. ~ 17. (현행과 같음)</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p>⑨ <u>119특수대응단장</u>-----.</p> <p>1. ~ 12. (현행과 같음)</p> <p>제18조(총무과)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농업기술원 이전 추진에 관한 사항</u></p> <p>7. <u>농업기술원 청사 이전 관련 용역사업, 예산 등 행정절차 추진</u></p> <p>제30조의2(하부조직)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1. ~ 9.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4장 제1절 <u>균형발전본부</u></p> <p>제35조의2(본부장) <u>균형발전본부장</u>-----</p> <p>-----.</p> <p><u>제35조의3(하부조직)① 균형발전본부에 균형발전단을 둔다.</u></p> <p>② <u>균형발전단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u></p>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46조의4(하부조직) ① 수산안전기술원에 수산관리과·기술지원과·수산물안전관리센터를 둔다.</p> <p>② 수산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수산물안전관리센터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p> <p>③ 수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③ 균형발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사항 2. 도내 공공기관 이전 계획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서부청사 기능 조정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 시즌2 운영에 관한 사항 5.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6.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 7.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에 관한 사항 8.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총괄 9.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협력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초진신도심 개발계획 수립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서부권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12. 균형발전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13. 도 및 정부 균형발전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4. 균형발전사업평가 및 경상남도 균형발전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5. 지역혁신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16. 지역균형발전 대상지 선정 및 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17. 지방분권 업무 총괄 18. 서부경남 시·군 전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9. 낙후지역 지정, 소도읍 육성 지원, 거점지역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1.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2. 동서통합지대 조성에 관한 사항 23. 내륙권(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4. 서부지역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25. 본청 소관 민원의 서부청 연계 처리에 관한 사항 26. 서부청사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27. 서부청사 행정지원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8. 균형발전본부 내 각종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p>제46조의4(하부조직) ① ----- 수산관리과·수산물검사과를 둔다.</p> <p>② -----, 수산물검사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어촌지도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p> <p>③ -----.</p>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현 행	개 정 안
<p>1. ~ 10. (생 략)</p> <p>11. 귀어 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12.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④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u>1. 수산기술의 보급 및 어업경영 지도</u></p> <p><u>2. 양식산업 분석 및 지원에 관한 사항</u></p> <p><u>3. 어장 예비관찰 및 수산 재해 예방 지도</u></p> <p><u>4.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u></p> <p><u>5. 수산 양식장 적지 조사에 관한 사항</u></p> <p><u>6. <삭제 2021.5.3.></u></p> <p><u>7. <삭제 2021.5.3.></u></p> <p><u>8. 연구교습어장 운영에 관한 사항</u></p> <p><u>9. 기술지도선 운영 및 관리</u></p> <p><u>10. 배합사료 직불제에 관한 사항</u></p> <p><u>11.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u></p> <p><u>12. 현장애로 기술 개발</u></p> <p>⑤ 수산물안전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u>1.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u></p> <p><u>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u>3. 수산생물 병성감정기관 운영</u></p> <p><u>4.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 관한 사항</u></p> <p><u>5. 수산생물 질병 및 방역 지도에 관한 사항</u></p> <p><u>6.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u></p> <p><u>7. 패류독소 검사에 관한 사항</u></p> <p><u>8.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u></p>	<p>1. ~ 10.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삭 제></u></p> <p>13. 수산기술의 보급 및 어업경영 지도</p> <p>14.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p> <p>15. 양식산업 분석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16. 어장 예비관찰 및 수산 재해 예방 지도</p> <p>17. 수산 양식장 적지 조사에 관한 사항</p> <p>18. 연구교습어장 운영에 관한 사항</p> <p>19. 기술지도선 운영 및 관리</p> <p>20. 배합사료 직불제에 관한 사항</p> <p>21.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p> <p>22. 현장애로 기술 개발</p> <p>④ 수산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u>1.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u></p> <p><u>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u>3. 수산생물 병성감정기관 운영</u></p> <p><u>4.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 관한 사항</u></p> <p><u>5. 수산물 방사능검사에 관한 사항</u></p> <p><u>6. 수산생물 질병 및 방역 지도에 관한 사항</u></p> <p><u>7.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u></p> <p><u>8. 패류독소 검사에 관한 사항</u></p> <p><u>9.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u></p> <p><u><삭 제></u></p>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④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은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시·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① 시·도는 별표 1에 따른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국·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는 제1항에 따라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삭제 또는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그 설치 내용,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조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시·도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도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도의 과·담당관 등의 설치) 시·도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시·도자치경찰위원회)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119출장소·119안전센터 등) ①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소방정대(消防艇隊) 및 119지역대를 둘 수 있다.

② 119출장소장·119안전센터장·119구조대장·119구급대장·119구조구급센터장·소방정대장 및 119지역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119출장소·119안전센터·소방정대 및 119지역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경상남도조례 제 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7,143명”을 “7,144명”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2,470명”을 “2,47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69명”을 “68명”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한시정원) 제4조의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별지 별표3(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별표 3] (제4조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직종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 자유구역청
총합계	7,144							
정무직합계	3	1					2	
정무직	3	1					2	
일반직합계	2,384							
2급	1				1			
2·3급	2	1	1					
3급	14	13		1				
3·4급	2	1					1	
4급	94	70	4	7		12	1	
5급이하 소계	2,260							
전문경력관 소계	11							
연구직합계	257							
연구관	40			39		1		
연구사	217							
지도직합계	31							
지도관	8			8				
지도사	23							
별정직합계	22							
1급상당	1	1						
4급상당	9		9					
5급상당이하 소계	12							
소방직합계	4,373							
소방정	25	7		18				
소방령이하	4,348							
교육직합계	74							
총장	2			2				
교수·부교수·조교수	54			54				
조교	18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별표 4] (제7조 관련)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정원관리기관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존속기한
계				1	
본청	관광개발국	일반직	3급	1	2025. 1. 3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14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2,470명</u></p> <p>2. ~ 4. (생략)</p> <p>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u>69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 ----- -----7,144명----- -----.</p> <p>1. ----- <u>2,472명</u></p> <p>2. ~ 4. (현행과 같음)</p> <p>5. ----- <u>68명</u></p>
<u><신설></u>	제7조(한시정원) 제4조의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3] (제4조 관련)</p> <p>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p>	<p>[별표 3] (제4조 관련)</p> <p>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rowspan="2" style="width: 10%;">직종/직급별</th> <th colspan="8">기관별</th> </tr> <tr> <th>총계</th> <th>본청</th> <th>의회사무처</th> <th>직속기관</th> <th>지역본부</th> <th>사업소</th> <th>합의제행정기관</th> <th>경제자유구역청</th> </tr> <tr> <td>총합계</td> <td colspan="8">7,143</td> </tr> <tr> <td>정무직합계</td> <td>3</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2</td> <td></td> </tr> <tr> <td>정무직</td> <td>3</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2</td> <td></td> </tr> <tr> <td>일반직합계</td> <td colspan="8">2,383</td> </tr> <tr> <td>2급</td> <td>1</td> <td></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3급</td> <td>2</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직종/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총합계	7,143								정무직합계	3	1					2		정무직	3	1					2		일반직합계	2,383								2급	1			1					2·3급	2	1	1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rowspan="2" style="width: 10%;">직종/직급별</th> <th colspan="8">기관별</th> </tr> <tr> <th>총계</th> <th>본청</th> <th>의회사무처</th> <th>직속기관</th> <th>지역본부</th> <th>사업소</th> <th>합의제행정기관</th> <th>경제자유구역청</th> </tr> <tr> <td>총합계</td> <td colspan="8">7,144</td> </tr> <tr> <td>정무직합계</td> <td>3</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2</td> <td></td> </tr> <tr> <td>정무직</td> <td>3</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2</td> <td></td> </tr> <tr> <td>일반직합계</td> <td colspan="8">2,384</td> </tr> <tr> <td>2급</td> <td>1</td> <td></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3급</td> <td>2</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직종/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총합계	7,144								정무직합계	3	1					2		정무직	3	1					2		일반직합계	2,384								2급	1			1					2·3급	2	1	1					
직종/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총합계	7,143																																																																																																																																														
정무직합계	3	1					2																																																																																																																																								
정무직	3	1					2																																																																																																																																								
일반직합계	2,383																																																																																																																																														
2급	1			1																																																																																																																																											
2·3급	2	1	1																																																																																																																																												
직종/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총합계	7,144																																																																																																																																														
정무직합계	3	1					2																																																																																																																																								
정무직	3	1					2																																																																																																																																								
일반직합계	2,384																																																																																																																																														
2급	1			1																																																																																																																																											
2·3급	2	1	1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현									개									정									안								
기관별		총	본	의회	직속	지역	사	합의	경제	기관별		총	본	의회	직속	지역	사	합의	경제	기관별		총	본	의회	직속	지역	사	합의	경제						
직종직급별		계	청	사무처	기관	본부	업	제	자유	직종직급별		계	청	사무처	기관	본부	업	제	자유	직종직급별		계	청	사무처	기관	본부	업	제	자유						
3급		13	12		1					3급		14	13		1					3급		14	13		1										
3·4급		2	1					1		3·4급		2	1					1		3·4급		2	1					1							
4급		93	69	4	7		12	1		4급		94	70	4	7		12	1		4급		94	70	4	7		12	1							
5급이하 소계		2,261														5급이하 소계		2,260																	
전문경력관 소계		11														전문경력관 소계		11																	
연구직합계		257														연구직합계		257																	
연구관		40			39		1			연구관		40			39		1			연구관		40			39		1								
연구사		217														연구사		217																	
지도직합계		31														지도직합계		31																	
지도관		8			8					지도관		8			8					지도관		8			8										
지도사		23														지도사		23																	
별정직합계		22														별정직합계		22																	
1급상당		1	1							1급상당		1	1							1급상당		1	1												
4급상당		9		9						4급상당		9	1	8						4급상당		9	1	8											
5급상당이하 소계		12														5급상당이하 소계		12																	
소방직합계		4,373														소방직합계		4,373																	
소방정		25	7		18					소방정		25	7		18					소방정		25	7		18										
소방령이하		4,348														소방령이하		4,348																	
교육직합계		74														교육직합계		74																	
총장		2			2					총장		2			2					총장		2			2										
교수·부교수 · 조교수		54			54					교수·부교수 · 조교수		54			54					교수·부교수 · 조교수		54			54										
조교		18														조교		18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경상남도 공무원 직급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 관련 조문 :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4년)	2차년도 (’25년)	3차년도 (’26년)	4차년도 (’27년)	5차년도 (’28년)
인건비	2,131,325	2,152,638	2,174,165	2,195,906	2,217,865

3. 관련 의견

- ’23년도 예산 인건비 산출기초 및 인상률(1.0%) 참조 작성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구 분	직 급	인원(명)	1인당년간 소요(천원)	증감액(천원)	비 고
계				2,131,325	
일반직	3급	1	142,707	142,707	연봉제
	4급	1	128,698	128,698	연봉제
	5급	16	111,192	1,779,072	연봉제
	6급	-7	73,933	-517,531	16호봉
	7급	-9	52,936	-476,424	7호봉
	8급	-4	40,423	-161,692	3호봉
	9급	3	35,492	106,476	2호봉
소방직	소방경	4	84,052	336,208	20호봉
	소방위	32	70,468	2,254,976	14호봉
	소방교	-1	45,555	-45,555	5호봉
	소방사	-35	40,446	-1,415,610	4호봉

작성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장 재 혁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4년)	2차년도 (’25년)	3차년도 (’26년)	4차년도 (’27년)	5차년도 (’28년)
인건비	2,131,325	2,152,638	2,174,165	2,195,906	2,217,865

2. 관련 의견

- 신규업무 발생부서 정원 조정 및 현안사업 전담조직 신설 등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기준인력 범위 내 조정임

3.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 성 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장 재 혁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④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닌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함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정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시·도별 및 계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④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도별 정원(제3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은 제외하며, 이하 “시·도별정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배치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도별정원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도별정원의 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별정원을 증감하여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도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제3조(정원의 배정 및 통보) ① 시·도는 영 제2조제5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소속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하부조직별로 배정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정원 배정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2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도별 정원을 증감하여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정원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소방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다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상남도규칙 제 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별지 별표(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직종	직급	직렬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 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총합계			7,144	1,910	157	68	4,491	1	513	4
정무직 합계			3	1		2				
	단체장 합계		1	1						
정무직	단체장	정무	1	1						
	2급상당 합계		1			1				
정무직	2급상당	정무	1			1				
	3급상당 합계		1			1				
정무직	3급상당	정무	1			1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직종	직급	직렬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 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일반직 합계			2,384	1,613	146	66	111	1	443	4
	2급 합계		1					1		
일반직	2급	행정	1					1		
	2·3급 합계		2	1	1					
일반직	2·3급	행정	2	1	1					
	3급 합계		14	13			1			
일반직	3급	행정	14	13			1			
	3·4급 합계		2	1		1				
일반직	3·4급	행정	1			1				
일반직	3·4급	행정·기술	1	1						
	4급 합계		94	70	4	1	7		12	
일반직	4급	행정	16	4	3	1	5		3	
일반직	4급	행정·기술	65	60	1		1		3	
일반직	4급	행정·기술·농업연구	1						1	
일반직	4급	행정·기술·농지연구	1						1	
일반직	4급	행정·기술·농촌지도	1				1			
일반직	4급	행정·기술·어촌지도	1						1	
일반직	4급	기술	5	5						
일반직	4급	기술·농업연구·수의연구	1						1	
일반직	4급	기술·수의연구	2	1					1	
일반직	4급	기술·해양수산연구	1						1	
	5급 합계		442	354	22	11	12		42	1
일반직	5급	행정	142	113	6	7	10		5	1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	14	13		1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1	1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보건	4	3	1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일반직	5급	행정·사서	2						2	
일반직	5급	행정·속기·보건·환경	1		1					
일반직	5급	행정·공업	32	31					1	
일반직	5급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일반직	5급	행정·공업·농지·환경	1		1					
일반직	5급	행정·공업·환경	1	1						
일반직	5급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일반직	5급	행정·공업·시설	7	6	1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직종	직급	직렬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 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일반직	5급	행정·공업·방송통신	2	1	1					
일반직	5급	행정·농업	12	11					1	
일반직	5급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일반직	5급	행정·농업·보건·식품위생	1	1						
일반직	5급	행정·농업·보건·환경	8		8					
일반직	5급	행정·농업·식품위생	2	2						
일반직	5급	행정·농업·환경·시설	2	2						
일반직	5급	행정·농업·시설	1	1						
일반직	5급	행정·농업·농업연구	1						1	
일반직	5급	행정·녹지	4	3					1	
일반직	5급	행정·녹지·시설	2	1					1	
일반직	5급	행정·녹지·녹지연구	1						1	
일반직	5급	행정·수의·환경	1	1						
일반직	5급	행정·해양수산	7	6					1	
일반직	5급	행정·해양수산·환경·시설	1	1						
일반직	5급	행정·해양수산·시설	3	3						
일반직	5급	행정·해양수산· 해양수산연구	1						1	
일반직	5급	행정·보건	2	2						
일반직	5급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일반직	5급	행정·보건·식품위생·간호	1	1						
일반직	5급	행정·보건·간호	6	6						
일반직	5급	행정·보건·환경								
일반직	5급	행정·보건·환경·시설	1	1						
일반직	5급	행정·간호								
일반직	5급	행정·환경	5	5						
일반직	5급	행정·시설	58	56	1	1				
일반직	5급	행정·시설·방재안전	2	2						
일반직	5급	행정·시설·방송통신	1	1						
일반직	5급	행정·방송통신	6	5			1			
일반직	5급	행정·학예연구	1						1	
일반직	5급	행정·기록연구	1						1	
일반직	5급	공업·환경	3	3						
일반직	5급	공업·시설	2	1					1	
일반직	5급	공업·시설·방송통신	1	1						
일반직	5급	농업	4	3					1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직종	직급	직렬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 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일반직	5급	농업·수의	3	3						
일반직	5급	농업·수의·보건	1	1						
일반직	5급	농업·수의·식품위생· 수의연구	1	1						
일반직	5급	농업·수의·수의연구	1	1						
일반직	5급	농업·시설	1	1						
일반직	5급	농업·농업연구	1						1	
일반직	5급	녹지	6	5					1	
일반직	5급	녹지·녹지연구	1						1	
일반직	5급	수의	2	2						
일반직	5급	수의·보건·의무·간호	1	1						
일반직	5급	수의·수의연구	9	1					8	
일반직	5급	해양수산	5	5						
일반직	5급	해양수산·보건·간호	1	1						
일반직	5급	해양수산·시설	2	2						
일반직	5급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3						3	
일반직	5급	해양수산·어촌지도	6						6	
일반직	5급	보건·식품위생	2	2						
일반직	5급	보건·의무								
일반직	5급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일반직	5급	보건·의무·간호	2	2						
일반직	5급	보건·간호	1	1						
일반직	5급	보건·환경	2	2						
일반직	5급	환경	3	2					1	
일반직	5급	환경·시설	1	1						
일반직	5급	시설	30	26		2			2	
일반직	5급	시설·농업연구	1				1			
일반직	5급	방송통신	1	1						
	6급 합계		790	541	71	33	30		112	3
일반직	6급	행정	273	185	46	14	15		10	3
일반직	6급	행정·세무	10	7	1	1	1			
일반직	6급	행정·세무·전산	2	1					1	
일반직	6급	행정·전산	25	18	2	3	2			
일반직	6급	행정·전산·공업	1	1						
일반직	6급	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	1		1					
일반직	6급	행정·사회복지	8	5		2	1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직종	직급	직렬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 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일반직	6급	행정·사회복지·보건	3	2	1					
일반직	6급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사서	1						1	
일반직	6급	행정·공업	22	21					1	
일반직	6급	행정·공업·농지·환경	1		1					
일반직	6급	행정·공업·해양수산	1	1						
일반직	6급	행정·공업·해양수산·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공업·환경	1	1						
일반직	6급	행정·공업·시설	6	4	1	1				
일반직	6급	행정·공업·방송통신	2	2						
일반직	6급	행정·농업	13	11		1			1	
일반직	6급	행정·농업·수의	1	1						
일반직	6급	행정·농업·수의·해양수산	1		1					
일반직	6급	행정·농업·보건·환경	9		9					
일반직	6급	행정·농지	5	1					4	
일반직	6급	행정·농지·해양수산	1			1				
일반직	6급	행정·수의·수의연구	1						1	
일반직	6급	행정·해양수산	10	3					7	
일반직	6급	행정·해양수산·시설	5	5						
일반직	6급	행정·보건	4	4						
일반직	6급	행정·보건·간호	2	2						
일반직	6급	행정·보건·환경·시설	3	3						
일반직	6급	행정·보건·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식품위생	1	1						
일반직	6급	행정·환경	4	3					1	
일반직	6급	행정·환경·시설	2	1					1	
일반직	6급	행정·방재안전	1	1						
일반직	6급	행정·시설	64	54	1	2			7	
일반직	6급	행정·방송통신	3	3						
일반직	6급	행정·기록연구	2						2	
일반직	6급	행정·농촌지도	2				2			
일반직	6급	세무	7	7						
일반직	6급	세무·전산	1	1						
일반직	6급	전산	9	6			1		2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직종	직급	직렬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 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일반직	6급	전산·공업	1	1						
일반직	6급	전산·시설	1	1						
일반직	6급	사회복지	3	3						
일반직	6급	사회복지·보건	1	1						
일반직	6급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일반직	6급	사회복지·시설	2	1		1				
일반직	6급	사회복지·방송통신	1	1						
일반직	6급	숙기	4		4					
일반직	6급	공업	13	9		1			3	
일반직	6급	공업·환경	1	1						
일반직	6급	공업·방재안전	1	1						
일반직	6급	공업·방재안전·시설	1	1						
일반직	6급	공업·시설	6	3		1			2	
일반직	6급	공업·시설·방송통신	1		1					
일반직	6급	공업·방송통신	2	1					1	
일반직	6급	농업	14	10			1		3	
일반직	6급	농업·수의	7	7						
일반직	6급	농업·해양수산	1	1						
일반직	6급	농업·시설	2	2						
일반직	6급	농업·시설·농촌지도	1						1	
일반직	6급	농업·농업연구	4	1			1		2	
일반직	6급	녹지	9	7					2	
일반직	6급	녹지·시설	2	2						
일반직	6급	녹지·녹지연구	6						6	
일반직	6급	수의	14	2					12	
일반직	6급	수의·보건·식품위생	1	1						
일반직	6급	수의·보건·간호·보건연구	1	1						
일반직	6급	수의·수의연구	10	2					8	
일반직	6급	해양수산	35	17					18	
일반직	6급	해양수산·시설	2	2						
일반직	6급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2						2	
일반직	6급	보건	6	6						
일반직	6급	보건·식품위생	2	2						
일반직	6급	보건·식품위생·환경	1	1						
일반직	6급	보건·환경	2	1		1				
일반직	6급	식품위생	1	1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직종	직급	직렬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 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일반직	6급	간호	1	1						
일반직	6급	간호·시설관리	1	1						
일반직	6급	환경	13	13						
일반직	6급	환경·시설								
일반직	6급	방재안전	1	1						
일반직	6급	시설	73	56		4	4		9	
일반직	6급	시설·방재안전	2	2						
일반직	6급	시설·방송통신	1	1						
일반직	6급	방송통신	8	8						
일반직	6급	시설관리	1		1					
일반직	6급	운전	7	3	1		1		2	
일반직	6급	전기운영	2	2						
일반직	6급	기계운영	4	2			1		1	
일반직	6급	사무운영	2	2						
	7급 합계		681	441	34	17	25		164	
일반직	7급	행정	176	129	3	8	13		23	
일반직	7급	행정·세무	5	4	1					
일반직	7급	행정·전산	19	15	2		1		1	
일반직	7급	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	2		2					
일반직	7급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일반직	7급	행정·사회복지	13	12			1			
일반직	7급	행정·사회복지·보건	4	3	1					
일반직	7급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1	1						
일반직	7급	행정·사회복지·시설	2	2						
일반직	7급	행정·사서	6				1		5	
일반직	7급	행정·공업	24	22	1				1	
일반직	7급	행정·공업·농지·환경	1		1					
일반직	7급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일반직	7급	행정·공업·환경	2	2						
일반직	7급	행정·공업·시설	2	1	1					
일반직	7급	행정·공업·방송통신	1	1						
일반직	7급	행정·농업	7	5					2	
일반직	7급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일반직	7급	행정·농업·보건·환경	7		7					
일반직	7급	행정·농업·식품위생	2	2						
일반직	7급	행정·농업·환경	1	1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직종	직급	직렬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 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일반직	7급	행정·농업·농업연구	1						1	
일반직	7급	행정·농지	4	2					2	
일반직	7급	행정·농지·시설	3						3	
일반직	7급	행정·해양수산	5	4					1	
일반직	7급	행정·해양수산·시설	2	1					1	
일반직	7급	행정·보건	2	1			1			
일반직	7급	행정·보건·간호	1	1						
일반직	7급	행정·보건·환경	2	1		1				
일반직	7급	행정·간호·시설	1				1			
일반직	7급	행정·환경	2	2						
일반직	7급	행정·환경·시설	5	5						
일반직	7급	행정·방재안전	3	3						
일반직	7급	행정·시설	44	34	1	5			4	
일반직	7급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일반직	7급	행정·기록연구	2						2	
일반직	7급	행정·농촌지도	1				1			
일반직	7급	세무	5	5						
일반직	7급	전산	9	8					1	
일반직	7급	전산·시설	1	1						
일반직	7급	전산·방송통신	1	1						
일반직	7급	사회복지	5	5						
일반직	7급	사회복지·농업	1	1						
일반직	7급	사회복지·보건·간호	3	3						
일반직	7급	사회복지·시설	3	3						
일반직	7급	사서	9		1		2		6	
일반직	7급	속기	5		5					
일반직	7급	공업	19	11	4				4	
일반직	7급	공업·해양수산·시설	1						1	
일반직	7급	공업·환경	2	2						
일반직	7급	공업·시설	7	3					4	
일반직	7급	농업	8	6					2	
일반직	7급	농업·수의	4	4						
일반직	7급	농업·해양수산	1	1						
일반직	7급	농업·보건·식품위생·환경	1	1						
일반직	7급	농업·보건·환경	1			1				
일반직	7급	농업·시설	2	2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직종	직급	직렬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 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일반직	7급	농업·농업연구	2						2	
일반직	7급	녹지	13	6					7	
일반직	7급	녹지·시설	3	2					1	
일반직	7급	녹지·시설·녹지연구	1						1	
일반직	7급	녹지·녹지연구	1						1	
일반직	7급	수의	35	2					33	
일반직	7급	수의·해양수산·식품위생	1	1						
일반직	7급	수의·보건	1	1						
일반직	7급	수의·수의연구	7						7	
일반직	7급	해양수산	31	17					14	
일반직	7급	해양수산·시설	4	4						
일반직	7급	해양수산·방송통신	1	1						
일반직	7급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3						3	
일반직	7급	보건	1	1						
일반직	7급	보건·식품위생	3	3						
일반직	7급	보건·식품위생·간호	1	1						
일반직	7급	보건·식품위생·환경								
일반직	7급	보건·간호	1	1						
일반직	7급	보건·환경	3	3						
일반직	7급	간호	7	3			3		1	
일반직	7급	환경	7	7						
일반직	7급	환경·시설	3	3						
일반직	7급	방재안전	2	2						
일반직	7급	시설	63	48		2			13	
일반직	7급	시설·방재안전	2	2						
일반직	7급	방송통신	12	8					4	
일반직	7급	시설관리	3						3	
일반직	7급	운전	15	6	3		1		5	
일반직	7급	통신운영·사무운영	1	1						
일반직	7급	전기운영	2	2						
일반직	7급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일반직	7급	기계운영	4	1					3	
일반직	7급	사무운영	2	1					1	
	8급 합계		306	172	8	1	31		94	
일반직	8급	행정	75	57	3	1	3		11	
일반직	8급	행정·세무	1	1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직종	직급	직렬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 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일반직	8급	행정·전산	5	3			1		1	
일반직	8급	행정·전산·공업	1	1						
일반직	8급	행정·전산·보건								
일반직	8급	행정·사회복지	8	8						
일반직	8급	행정·사서	2						2	
일반직	8급	행정·공업	17	11			3		3	
일반직	8급	행정·공업·시설	1	1						
일반직	8급	행정·농업	6	1			3		2	
일반직	8급	행정·농업·녹지								
일반직	8급	행정·농업·환경	1	1						
일반직	8급	행정·녹지	1						1	
일반직	8급	행정·녹지·환경	1	1						
일반직	8급	행정·해양수산	6	5					1	
일반직	8급	행정·해양수산·시설	2	1					1	
일반직	8급	행정·보건	2	2						
일반직	8급	행정·보건·식품위생	2	2						
일반직	8급	행정·보건·시설	1	1						
일반직	8급	행정·환경	5	5						
일반직	8급	행정·시설	19	18			1			
일반직	8급	행정·방송통신	1	1						
일반직	8급	세무	2	2						
일반직	8급	전산	6	4			2			
일반직	8급	전산·사회복지·사서	1						1	
일반직	8급	전산·녹지·환경	1	1						
일반직	8급	전산·방재안전·방송통신	1	1						
일반직	8급	전산·방송통신	4	2			1		1	
일반직	8급	사회복지	1	1						
일반직	8급	사회복지·보건·간호								
일반직	8급	숙기	3		3					
일반직	8급	공업	8						8	
일반직	8급	공업·농업	1						1	
일반직	8급	공업·시설	4	2					2	
일반직	8급	공업·방송통신	1	1						
일반직	8급	농업	3	3						
일반직	8급	농업·시설	1	1						
일반직	8급	녹지	4	3					1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직종	직급	직렬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 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일반직	8급	녹지·환경·시설	1	1						
일반직	8급	녹지·시설	1						1	
일반직	8급	해양수산	23	1					22	
일반직	8급	해양수산·환경	1	1						
일반직	8급	해양수산·시설	1	1						
일반직	8급	보건	2				1		1	
일반직	8급	보건·식품위생	3	3						
일반직	8급	보건·환경	3	3						
일반직	8급	식품위생	1	1						
일반직	8급	간호								
일반직	8급	환경	4	4						
일반직	8급	환경·시설	1	1						
일반직	8급	시설	20				1		19	
일반직	8급	시설·방재안전	2	2						
일반직	8급	방송통신	3	2					1	
일반직	8급	위생	1				1			
일반직	8급	위생·조리	1	1						
일반직	8급	시설관리	5				2		3	
일반직	8급	운전	19	5			8		6	
일반직	8급	전기운영	1		1					
일반직	8급	기계운영	3		1				2	
일반직	8급	선박항해운영	1						1	
일반직	8급	사무운영	11	5			4		2	
	9급	합계	41	12	6	2	2		19	
일반직	9급	행정	6	3		2			1	
일반직	9급	농업	2						2	
일반직	9급	방송통신	1	1						
일반직	9급	위생	1				1			
일반직	9급	시설관리	2						2	
일반직	9급	운전	9						9	
일반직	9급	전기운영	2						2	
일반직	9급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일반직	9급	기계운영	4	2			1		1	
일반직	9급	사무운영	13	6	6				1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직종	직급	직렬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 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전문경력관 (가군) 합계		1	1						
일반직	전문경력관 (가군)	비상계획관	1	1						
	전문경력관 (나군) 합계		10	7			3			
일반직	전문경력관 (나군)	문화재관리원	1	1						
일반직	전문경력관 (나군)	항공사진판독사	1	1						
일반직	전문경력관 (나군)	직업훈련교사	1	1						
일반직	전문경력관 (나군)	생활체육교사	1				1			
일반직	전문경력관 (나군)	촬영기사	2	2						
일반직	전문경력관 (나군)	화생방요원	1	1						
일반직	전문경력관 (나군)	인쇄발간원	1	1						
일반직	전문경력관 (나군)	농기계교육교관	2				2			
연구직 합계			257	4			183		70	
	연구관 합계		40				39		1	
연구직	연구관	학예연구	1						1	
연구직	연구관	농업연구	19				19			
연구직	연구관	보건연구	4				4			
연구직	연구관	보건연구·환경연구	11				11			
연구직	연구관	환경연구	5				5			
	연구사 합계		217	4			144		69	
연구직	연구사	학예연구	12	2					10	
연구직	연구사	기록연구	7	2					5	
연구직	연구사	공업연구	2				2			
연구직	연구사	농업연구	70				59		11	
연구직	연구사	녹지연구	10						10	
연구직	연구사	수의연구	12						12	
연구직	연구사	해양수산연구	21						21	
연구직	연구사	보건연구	37				37			
연구직	연구사	보건연구·환경연구	10				10			
연구직	연구사	환경연구	36				36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직종	직급	직렬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 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지도직	합계		31				31			
	지도관	합계	8				8			
지도직	지도관	농업연구·농촌지도	1				1			
지도직	지도관	농촌지도	7				7			
	지도사	합계	23				23			
지도직	지도사	농촌지도	23				23			
별정직	합계		22	11	11					
	1급·1급상당 합계		1	1						
별정직	1급·1급상당	행정·별정	1	1						
	4급·4급상당 합계		8		8					
별정직	4급·4급상당	행정·기술·별정 (전문위원)	8		8					
	4급상당 합계		1		1					
별정직	4급상당	별정(비서실장)	1		1					
	5급상당 합계		6	6						
별정직	5급상당	국제관계대사	1	1						
별정직	5급상당	특별보좌관	3	3						
별정직	5급상당	별정(비서)	2	2						
	6급상당 합계		3	2	1					
별정직	6급상당	별정(비서)	3	2	1					
	7급상당 합계		2	1	1					
별정직	7급상당	별정(비서)	2	1	1					
	8급상당 합계		1	1						
별정직	8급상당	별정(비서)	1	1						
소방직	합계		4,373	281			4,092			
	소방정	합계	25	7			18			
소방직	소방정	소방	25	7			18			
	소방령	합계	97	30			67			
소방직	소방령	소방	97	30			67			
	소방경	합계	336	42			294			
소방직	소방경	소방	336	42			294			
	소방위	합계	425	62			363			
소방직	소방위	소방	425	62			363			
	소방장	합계	702	73			629			
소방직	소방장	소방	702	73			629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직종	직급	직렬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 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소방교 합계		1,058	39			1,019			
소방직	소방교	소방	1,058	39			1,019			
	소방사 합계		1,730	28			1,702			
소방직	소방사	소방	1,730	28			1,702			
교육직 합계			74				74			
	총장 합계		2				2			
교육직	총장	총장	2				2			
	교수·부교수· 조교수 합계		54				54			
교육직	교수·부교수· 조교수	교수·부교수·조교수	54				54			
	조교 합계		18				18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④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정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시·도별 및 계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④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도별 정원(제3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은 제외하며, 이하 “시·도별정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배치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도별정원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도별정원의 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별정원을 증감하여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도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및 통보) ① 시·도는 영 제2조제5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소속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하부조직별로 배정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정원 배정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2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도별 정원을 증감하여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정원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소방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다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상남도규칙 제 호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총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을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으로, “총무담당관은”을 “의정담당관은”으로, “소통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및 입법담당관은”을 “의사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및 입법담당관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총무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5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장 밑에 <u>총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및 입법담당관</u> 을 두며, <u>총무담당관</u> 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u>소통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및 입법담당관</u> 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입법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3조(하부조직) ① ----- <u>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u> ----- <u>의정담당관은</u> ----- --- <u>의사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및 입법담당관</u>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u>총무담당관</u>) <u>총무담당관</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u>의정담당관</u>) <u>의정담당관</u>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u>제5조</u> (생략)	<u>제6조</u> (현행 제5조와 같음)
<u>제6조</u> (생략)	<u>제5조</u> (현행 제6조와 같음)

<별 지>

[별표 2]

세 부분장 사무

과 별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의 정 담당관	의 정 인사교육 경 리 청사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기록물·보안·관인·공인 관리 3. 의원 등록관리 및 윤리강령 전반에 관한 사항 4. 의원역량개발 교육 및 연찬회 관련 사항 5. 의전에 관한 사항 6. 의원 국제친선연맹 교류 및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7. 집행부 위원회 의원추천 관련 사항 8.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9.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0. 의회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11. 도의회의장 포상계획 수립·시행 총괄 12. 의회 경비 및 의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3.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14. 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15.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 승진, 전보, 파견,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17. 공무원 명예퇴직·조기퇴직·공로연수제도 운영 18. 대우공무원 지정 19. 인사기록 보존관리 및 인사통계 운영 20. 공무원증 발급 21. 인사행정정보시스템운영 22. 의회사무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3. 공무원 등 비공무원 인사관리 총괄 24.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25. 공무원 표창에 관한 사항 26.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7. 의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8. 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29. 보수, 제 수당지급 및 관련 자료 정리 30.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 31. 의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32.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보관 33. 물품 및 차량유지·관리 34.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및 회계직인 관리 35. 일상경비 교부 및 출납사무 검사 36.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계산서 처리 37. 법인카드 종합관리 38. 청사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9. 청사 증축 계획 수립 및 추진 40. 청사 시설물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41. 청사시설 신·증설 및 수선공사 설계·감독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과 별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의 정 담당관	의 정 인사교육 경 리 청사관리	42. 청사 내 공간 조정·배치에 관한 사항 43. 청사 중앙통제실 운영에 관한 사항 44. 청사 수·변전실 등 전기시설 유지관리 45. 청사 냉·난방시설 등 기계시설 유지관리 46. 청사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및 추진 48. 의원숙소 및 대회의실 등 대관 49. 의회 청사 실내·외 청소 및 조경 관리 50. 청소·조경관리 공무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의 사 담당관	의 사 기 록	1. 연간 회기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 지원 3.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 총괄 4.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의안의 접수·회부·이송 등 처리 및 의결 문서 보존관리 6.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7.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관한 사항 8. 전·후반기 원구성 총괄 9. 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등 협의에 관한 사항 11. 5분 자유발언 등 본회의장 발언에 관한 사항 12. 서면질문 및 답변에 관한 사항 13. 의안 통계자료 작성 및 의안 처리부 정리 14. 본회의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5. 소관 예산 집행 및 결산 16. 회의록 작성·발간·배부 및 보존관리 17. 본회의, 위원회 등 회의진행사항의 녹음 및 속기 18. 속기요원의 본회의, 위원회 등 회의장 배치 19. 회의록 검색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소 통 홍 보 담당관	소 통 미디어홍보 도민공감 정보화	1. 미디어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의정 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브리핑룸 관리·운영 3. 언론대담 및 인터뷰 지원 4. 기자단 취재 지원 및 언론 모니터링 5. 사진 촬영 및 관리 6. 신문구독 및 광고 7. 도의회 TV 및 라디오 공익 캠페인 광고 8. 의정 홍보 영상물 제작·관리 9. 의회소식지 및 각종 간행물 발간 10. 의회사 편찬 11. 도민소통 및 공감도 향상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 12. 도의회 SNS 매체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3. 도의회 의정활동 SNS 콘텐츠 기획·제작·운영 14. 도의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15.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16. 본회의(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유튜브 생방송 운영 17. 도의회 의정홍보 영상(유튜브) 기획 및 제작 18. 도의회 SNS 매체별 통계 작성 및 분석

경 남 공 보

제2642호(그2)

2023. 11. 16.(목)

과 별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소 통 홍 보 담당관	소 통 미디어홍보 도민공감 정보화	19. 의정뉴스 기획 및 제작 20. 방송 및 음향시설 관리 21. 의정모니터링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22. 도민 만족도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23. 지역별 현안 민원관리 및 소관부서와 협의에 관한 사항 24. 현안 민원 현장조사 및 조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25. 청원·진정 민원의 접수·분류 및 처리결과 통지 26. 민원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27.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8. 의회 견학 및 방청·참관에 관한 사항 29. 의회 견학 및 방청·참관에 관한 사항 30. 자료실 관리·운영 31. 홍보관 관리·운영 32. 통신실 및 전산실 통합 유지관리 33.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34.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업무 총괄
입 법 담당관	입 법 입법평가 예산분석 연구 정책	1. 의회 소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총괄 관리 2. 조례 등의 제정·개정과 관련한 법제 지원 3. 자치입법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4.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 관련 법령 개선안 연구 5. 조례 제정·개정을 위한 토론회 지원 6.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리 7. 입법·법률고문 운영 8. 의회관련 법규집 제작 9. 입법평가 종합 기획·조정 10. 조례 사후 입법평가 운영 11.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 입법평가 관련 연구용역 및 자문 13. 입법평가 결과 사후관리 14. 도 및 교육청 예·결산 분석 15. 도 및 교육청 예산 주요사업 기획분석 16.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7.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관리 및 지원 18.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지원 19. 의회 관련 학술연구 용역 수행 20. 의장·사무처장 등의 지시사항 연구·검토 등 2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 22. 의원발의 조례안 등 기초조사 및 자료 분석 23. 지역현안·과제 접수 및 해결방안 검토 24. 정책보고서 발간 25. 그 밖에 도의원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 등

별표 2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세부분장사무			[별표 2] 세부분장사무		
과별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과별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총 무 담당관	총 무 인사교육 경리 청사관리	1. ~ 50. (생략)	의 정 담당관	의 정 인사교육 경리 청사관리	1. ~ 50. (현행과 같음)
소 통 홍 보 담당관	소통 미디어홍보 도민공감	1. ~ 34. (생략)	의 사 담당관	의사 기록	1. ~ 19. (현행과 같음)
의 사 담당관	의사 기록	1. ~ 19. (생략)	소 통 홍 보 담당관	소통 미디어홍보 도민공감 정보화	1. ~ 34. (현행과 같음)
입 법 담당관	입법 입법평가 예산분석 연구 정책	1. ~ 25. (생략)	입 법 담당관	입법 입법평가 예산분석 연구 정책	1. ~ 25.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시·도와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